

3. 노동조합 탄압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래 노동조합은 생산직뿐만 아니라 사무직, 전 문직, 서비스직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임금노동자 전반 의 기본조직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아직도 노 동조합의 설립을 불온시하고, 고소·고발, 단체협약 불이행, 폭력과 구 속, 해고 등으로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평화방송 같은 언 론기관에서 공권력 투입과 노동조합 와해를 서슴지 않을 정도로 노동조 합활동에 대한 탄압은 더욱 극심하다. 특히 1988년 말 이후 정부가 노동 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자 사용 자들은 노동조합의 작은 활동에도 강경대응으로 일관하였다. 특히 이런 현상은 민주노동조합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전노협 가입 사업장에 집중 되어 이 속에서 민주노동조합 활동은 조합원수나 활동력이 위축되고 있 어 전노협 등은 심한 조직원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구로공단에 서는 구속된 노동조합간부들에게 중형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굽직한 사 업장 사용자 19명이 연서해서 법원에 제출한 반인권적인 일까지 빚어진 바 있다.

1) 노동조합 결성 방해

(1) 유명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 설립 막아

구로 1공단에 위치한 (주)한국마벨에서는 유명노동조합이 존재하여 노 동조합 설립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식사와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산업체 부설학교에 다니던 임화순양이 쓰 러지자 친오빠 임정택씨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분개하여 식판을 엮었 다. 이 일이 있은 후 임정택씨는 회사를 떠나라는 종용을 받았고 같이 일하고 있던 금형과 동료들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관리자에게 항 의한 후 노동조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위원장 윤

두혁씨는 가입원서 접수조차 거부하였다. 알고보니 한국마벨노동조합은 5년 이상 총회는 물론 대의원회를 한 적이 없고, 조합원이 몇 명인지 누 가 조합원인지 모르는 전형적인 유명노동조합이었다. 이에 금형과·프 레스과 반원들은 '학생들 식사제공' '식사개선' '임정택 징계회부 백지 화' '노동조합 가입 보장'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1991년 6 월 10일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김봉식, 지경일, 김상준, 박 중천 4명을 해고하였고 김봉식씨는 경력사칭 및 사내질서 문란으로, 지 경일씨 외 2명은 업무방해, 명령불복종, 사내질서문란으로 해고하였다. 6월 11일에는 아침 출근시간에 회사에서 위 해고자 4명이 출근하는 것을 폭력으로 저지하자 동료 근로자 25명이 이에 항의하였다. 그러자 회사에 서는 질서문란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출근을 저지할 수 있다며 이들의 출근을 저지하였다.

(2) 관리자 중심으로 또다른 노동조합 만들어

구로공단내 반도체 제조업체인 (주)남성은 1월 5일 생산부서의 동료 1 명이 불량품을 많이 낸다는 이유로 회사측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자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수차례 항의집회를 갖고 회사측에 해고철회 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모두들 노동조합결성의 필요성을 절감 하게 되었다. 이들은 1월 8일 금속노동조합연맹 서울본부 사무실에서 노 동조합 창립대회를 열고 구청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3일이 지나도록 신고필증을 내주지 않았다. 이미 회사측에서 회사의 생산주임 등을 부추겨 노동조합을 결성케 하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미리 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상급단체 인준증이 없고 관리자 중심임 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측에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언론에 도 보도가 되자 결국 구청은 노동자측 노동조합에 인준증을 내주게 되었 다.

(3) 노동조합 결성하자마자 무조건 해고

삼성하청의 램코더 등을 만드는 구로동 소재 한국필렙전자는 임금소급

지급을 약속하고도 이를 실행하지 않자 이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이에 대해 회사는 주축 멤버의 대부분을 해고하고 1명은 98일간 소파에 얹혀 놓은 채 근무를 시키지 않는 등 노골적인 노동조합 탄압을 자행했고 이에 대해 해고된 8명 전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이 내려져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회사 쪽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자 노동조합간부가 비관자살한 사태마저 발생한 (주)금강수지공업노동조합은 설립 2개월 만에 무너진 사례이다. 1991년 3월 1일 결성식을 갖고 문근식 위원장을 선출한 금강수지공업노동조합은 다음날 회사쪽에 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측은 당일 교육부장을 해고하고 다른 간부를 부서이동시키면서 교섭을 회피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 조직부장을 맡았던 안승도씨가 3월 15일 노동조합 탄압과 비조합원·조합원 간의 불화상태를 비판, 자살하였고, 회사 측은 보상금문제로 이어진 상황에서 간부를 해고, 징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와 핵심조합원 대부분을 현장에서 이탈시켜 사실상 노동조합을 와해시켰다.

수원의 삼성전자단지 입구에 있는 퍼시픽 3사(콘트로즈, 와코전자, 닉교정밀) 또한 같은 계열사로서 지난 1~2월 노동자들이 각각 노동조합을 결성해 공동 단체협약안과 임금교섭안을 마련하는 등 활발한 활동에 들어갔으나 3월 12일 경수노련사건으로 3명이 구속되자 이어 회사측이 간부 등 13명을 해고하는 등 집요하게 탄압을 가하였다. 와코전자의 경우는 '상사지시 불이행' 등으로 위원장을 해고한 데 이어 새로 뽑힌 위원장도 똑같은 이유로 해고하는 한편 닉교정밀에서도 초대 노동조합 위원장이 퇴사하여 3개월 만에 위원장이 바뀌기도 하였다.

2) 노동조합활동 방해

(1) 해고위원장 인정 안해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노동조합법상의 명문규정과 대법원 판시가 계속 이를 받쳐주고 있지만

여전히 해고자의 조합원자격이나 간부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지하철공사의 구속간부 불인정 이후 문화방송에서도 법적 효력을 다투고 있는 해고위원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문화방송측은 지난해 'PD수첩' 사태로 해고된 안성일 위원장의 대표권을 인정하지 않아 단체교섭이 계속 무산되고 공문도 받지 않는 등 계속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성일 위원장은 회사 로비에서 5월 1일부터 1992년 연초까지 계속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측은 7월 '해고된 노동조합 위원장 대신 노동조합 위원장이 지명하는 대리인을 단체교섭에 내세우겠다'며 단체교섭을 재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회사측이 이 공문의 접수조차 거부해 더욱 경직된 노사관계를 낳고 있다. 회사측은 노동조합의 공문을 거부한 직후인 7월 24일 14.8%의 임금인상을 결정, 이를 통보했는데 이는 회사측이 단체교섭안으로 내세웠던 임금인상률 7.6%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인상률로 노동조합의 역할과 의미를 애써 축소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

(2) 구속된 노동조합간부 장기구금 요구 탄원서 제출

구로공단의 19개 업주들은 1990년 12월 나우정밀노동조합 위원장 김점숙, 이은순 부위원장, 강연미 선전부장의 재판을 앞두고 '위 노동조합 간부 3인에 대해 중벌을 내려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자료 2 참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재판장 이길수 귀하

본 탄원인들은 현재 구로공업단지 내의 업주기업체들로서 6·29선언 이후 극심한 악성노사분규로 인한 기업운영의 존폐의 기로에 와 있습니다. (중략) 그러므로 산업평화 유지와 경제하고 있는 제조업을 건전하게 이끌어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들 3인에 대하여 그들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내려주시어 그들을 일정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드리오며 저희 탄원기업체들의 고충을 심분 헤랑하시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90년 12월 4일

자기 자식을 죽인 죄인의 감형을 요구하는 탄원서는 있어도 차가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별관계도 없는 업주들이 중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일은 일반상식에 어긋나는 반인륜적인 행위로서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탄압의지가 어느 정도에 이르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3) 간부를 조합원 자격없는 자리로 발령

대한생명의 이문형씨는 1990년 7월 제3대 노동조합 정·부위원장 선거에서 위원장 후보로 입후보했다가 영업소장이라는 이유로 후보자격을 박탈당하고 선거업무방해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이어 회사는 이문형씨에게 감봉 9개월의 중징계와 경남 고성으로 전보발령을 내려 이에 이문형씨가 부당인사 철회와 원직복귀를 요구하자 '무단결근'으로 해고하였다.

또 대한생명측은 1991년 7월로 예정된 노동조합 위원장 재선거를 앞두고 현위원장 직무대행 이종락씨를 조합원 자격이 없는 대전영업소장으로 인사발령 내어 조합활동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한편 인천지역 의료보험조합측은 의료보험노동조합측이 4월 8일 인천지역 6개 의료보험노동조합 지부장들의 모임에 참석, 투쟁방향 등을 논의하였다고 5월 1일 중구노동조합지부장 공현규씨(32세)를 파면한 데 이어 북구와 남·동구의 노동조합 지부장을 차례로 파면하였다.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공현규씨 등이 4월 8일 의료보험노동조합 지부장회의에 참석, 근무지 무단이탈,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등을 범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측은 이 위원장들에게 진술기회도 주지 않았고 이들이 평소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보다 가난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평균적으로 3~4배 높게 받는 국민개인보험의 구조적 모순개선을 요구하고 조합운영의 전반적인 민주화를 요구해온 데 대한 보복조치적 성격도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부당파면에 대해 조합원들이 파업으로 맞서자 보험조합측은 공씨 등 16명을 고발하여 이 중 3명이 구속되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노동조합원들의 파업농성 돌입으로 106개 동 중 86개 동의 보험업무가 마비상태에 이르자 5월 9일부터 이들 지역의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어 노동조합원 140여 명이 3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한 채 농성을 계속하거나 막노동 공사장 등을 전전하기도 하였다.

(4) 폐수방류 여론화 후 보복적 탄압

대구 염색공업공단 노동조합은 지난 4월 17일 염색공단측에서 하루 2~3만여 톤이라는 엄청난 악성폐수를 금호강으로 불법 무단방류하고 있는 것이 이미 오래된 사실임을 국민연합 대구·경북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에 폭로하였다. 이 일은 1991년 3월 대구 폐물식수오염사건이 있던 얼마 후여서 사회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에 대해 회사는 대구 지역의 4대 일간지를 통해 노동조합을 비방하고 위원장을 매도하는 광고를 내는 한편 폐수 무단방류를 폭로한 4월부터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전면 중단하고, 노동조합원을 20명 이상 탈퇴시켰다. 또 5월 14일 노사 간 합의사항도 이사회 부결이라는 이유로 번복하고 10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미지급은 부당노동행위이니, 즉시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라”는 판정을 무시하고 계속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자료 3 참조).

(5) 이현령 비현령 해고

노동조합탄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해고이다. 해고는 산업합리화를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발생하지만 일상적인 노동조합활동 중에서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전혀 인정치 않고 노동자 편에 서서 활동하려는 이들을 격리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에서 나온다.

지난 1989년 1월부터 1991년 9월까지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는 하루 평균 4.1명꼴인 총 4,121명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은 전 노협이 '1989년 이후 조합활동 관련 해고노동자 현황'에서 밝혀졌는데 노동부가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 당시 국회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자수가 350명(1991년 6월 30일 현재)이라고 보고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단일노동조합으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5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장으로는 현대중공업 81명을 비롯 대우 56명, 태평양화학 36명 순이다.

해고는 주로 임금인상투쟁시기인 5,6월에 많이 발생하는데 지역별로는 부천 619명, 서울 506명, 경기(성남 포함) 443명, 부산 206명, 마창 141명, 울산 127명순이다.

기업그룹별로는 대우그룹이 137명, 현대그룹이 114명으로 나타났는데 대우측은 1991년도에 110명을 해고하였다. 대우조선의 어느 조합원은 반장에게 폭언을 했다 하여 해고되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많은 사업장에서 발견된다. 태백 황지광업소의 어느 조합원은 '국가원수 모독 기업주 비판'을 이유로 해고되었고, 서울의 BTI노동조합 위원장은 '작업일지 2일분 미제출'을 이유로 1991년 5월에 해고되었다(자료 4 참조).

해고된 사례는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실을 수 없어 특징적인 것 몇 개만 실어보면 파업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경찰력 투입과 동시에 이수홍 노동조합 위원장 등 6명을 구속하게 했던 태평양화학은 30명을 불법파업 참가 등을 이유로 해고시켰다. 이밖에도 정직, 감봉, 출근정지 등 모두 60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오라미노 연질캡셀을 주로 생산하는 초당약품에서도 1991년 4월 말 연질캡셀실에서 근무하던 조합원 3명이 그동안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해 온 데 대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안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당시 일거리가 별로 없었던 포장실로 발령을 낸 후 5월 30일자로 해고하였다.

충북 청주공단 소재 충북전자는 이 회사 상무이자 공장장인 전건하씨가 시의원에 당선되자마자 노동조합 결성보고대회를 앞두고 조합간부와 조합원을 해고하여 '가진 자의 편에 선 기초의원의 횡포'를 실감케 하였다.

여주 컨트리클럽(회장 서인석)은 회장의 친·인척을 간부로 임명,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노동조합과 사전협의없이 회사의 지시에 절대 복종할 것을 조건으로 임금을 22% 인상해 주겠다는 각서를 돌려 노동조합측이 이를 거부하자 사전 통고도 없이 노동조합 사무장 한덕우(39세)씨를 해

고하였다.

또 광주시 하남공단 내 금성알프스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임시총회를 연 광주지부장 김오순씨를 사규위반으로 해고하였다. 또 조인임 교육부장을 권고사직시키고 조정화 사무장에게 정직 7일의 징계를 통보하는 등 노동조합의 관례적인 임시총회를 불법으로 규정,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였다.

대우전자 구미공장은 2월 12일 김점배씨와 박순연씨 등 2명의 대의원을 시내 한복판에서 회사관리직원을 시켜 강제검색을 실시, 대구노동자협의회에서 발행한 불매운동 스티커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2월 22일자로 회사명예훼손과 불법스티커 부착행위를 이유로 해고조치하였다.

같은 계열회사인 대우정밀은 방위산업체로서 이 회사에는 250여 명 정도의 방위산업체 병역특례자들이 군복무를 대신한 '5'년 동안의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5년에서 한 달이라도 못 채우고 해고될 경우에는 그동안 근무한 것이 전혀 인정되지 않아 군대에서 다시 30개월을 보내야 한다. 1991년 6월 3일 대우정밀 파업시 회사측은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여 26명을 구속하고 46명을 해고했으며 100여 명을 정직, 감봉시켰는데 이 중에는 병역특례자가 13명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이 4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들로써 의무근무 만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해고가 되어 8월 22일 입대하라는 영장을 받았다.

한편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도 공사의 개혁을 요구하며 최근 '체신부 부당간섭저지투쟁위원회'에 참가한 30여 개 지부의 지부장 및 대의원들에 대해 불법단체 결성, '품위손상' 등의 이유를 들어 위원장 양한웅씨와 지부장, 대의원 9명에 대해 해고조치하고 나머지 12명에 대해 정직 및 징계조치하였다.

(6) 지켜지지 않는 복직판정

편파적이라 낙인이 찍힌 노동위원회에서조차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아 복직판정을 받은 해고자들의 복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동부

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1991년 4월에서 6월 2/4분기 동안 부당하게 해고되어 복직판정이 난 노동자는 215개 업체의 350명으로 나타났으나, 이 가운데 복직된 근로자는 157개 업체의 255명에 그쳤다고 나와 있다.

복직판정은 전반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나 사건화하지 못함으로 해서 개별사례를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 주로 구로공단 소재기업들의 1991년 복직판정 불이행사례만을 살펴보면 구로공단 소재 한국필렐의 경우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8명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전원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이규만 사장은 “중소기업이 법 다 지켜가면서 어떻게 경영하느냐”며 계속 복직명령을 거부하고 있다. 또 밀린 임금도 사표를 써야만 지급해 줄 수 있다며 버티고 있는 상태이다.

구로공단 소재 남성전기의 김경옥 위원장도 지난 4월 복직판정이 내려졌으나 회사측이 아직까지 계속 거부하여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천지산업의 이정삼 사무장도 복직명령이 내려졌으나 회사측은 복직하자 마자 다른 사유로 해고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백산전자의 김선영 사무장은 1991년 4월 관리자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으나 1991년 말 지방법원의 복직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를 계속 인정치 않고 1992년 1월 또다시 그녀를 구속시키도록 고발했는데 고발사유에는 조합원 자격을 인정치 않는 주거침입죄도 들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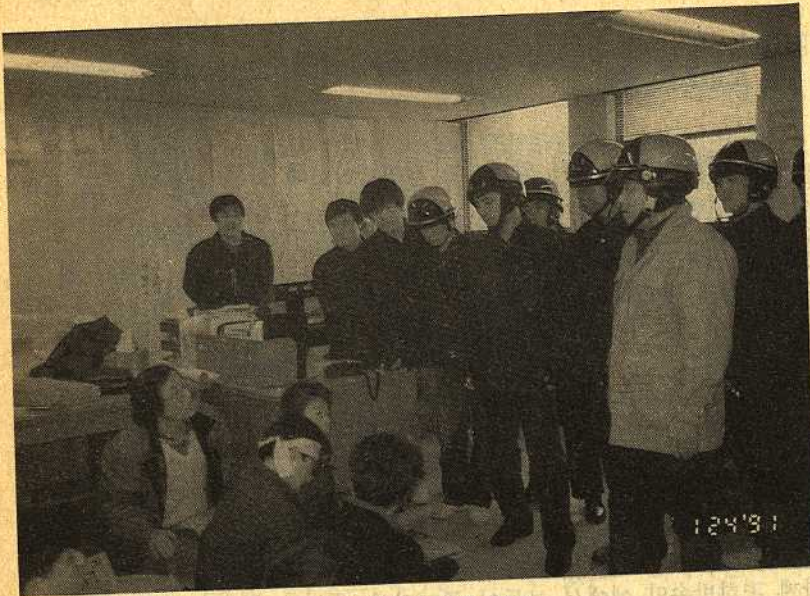
연장근로 거부를 이유로 한 출근정지 처분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일신통신의 노동자들은 법원의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직은커녕 12월 27일자로 해고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측의 강제집행정지신청으로 인해 출근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일신통신측은 법원의 패소판결을 받은 후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12월 24일까지 복직할 것과 그 안에 복직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내용의 통고문을 우송하였다. 그러나 통고문을 제때 전달받지 못한 노동자들이 12월 30일 회사를 찾아가자 회사측은 24일까지 복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12월 27일자로 이미 해고처분되었고 회사에 들어오고 싶으면 복직이 아닌 재입사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노동조합 외해

노동조합 진영의 힘이 약해지고 경영합리화에 의한 감원과 부도 등의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노동조합 외해도 늘고 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수보다는 이리저리한 이유로 해산되는 일이 더 잦은 상태가 된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및 조합원수는 1989년 말에는 7,883개, 193만 2천 명까지 늘었으나 1990년 말에는 처음으로 줄어들어 7,698개, 188만 1천 명이 되었다. 노동조합 외해작업은 1991년 들어 산업구조조정이나 국제경쟁력 약화 등에서 빚어진 경영합리화, 부도, 하청 등의 과정을 겪으면서 더욱더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계승되기보다는 주로 외해되는 것은 회사 쪽이 과도적 변화를 노동조합 탄압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 또한 강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평화방송의 예에서 보듯이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워 무차별 노동조합 외해작업을 벌이는 곳도 있다. 그리고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은 이러한 노동조합 외해작업은 경찰이나 검찰의 협조나 비호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1) 보수적 신부 사장의 등장이 빚은 노동조합 외해—평화방송

천주교의 공식방송인 평화방송은 1990년 4월 15일 개국 이후 1991년 공권력 투입으로 노동조합원들을 연행할 때까지 철저한 노동조합 탄압으로 일관하여 결국 노동조합을 외해하는 데 성공한 대표적인 사용주가 되었다. 사장을 맡은 조덕현 신부는 등기부상에까지 명확히 규정된 ‘복음화, 인간화, 민주화’라는 평화방송의 설립목적 가운데서 ‘민주화’ 부분을 제외하고 이념을 재구성하면서 카톨릭 내 극우보수세력의 입지를 다지고 평화방송의 민주적인 보도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전념하였다. 1990년 5월 18일 안성열 보도국장 대기발령으로 시작된 탄압은 무수한 징계와 경고장 발송 등을 남발하였다. 1991년 1월 18일에는 사회부 기자 이주상·이경훈·이현중씨에 대한 해고, 김승일·송태엽·김선옥씨에 대해



▲ 1991년 1월 24일 파업중인 농성장에 진압을 위해 들어온 백골단

서는 정직 3개월, 조성환·김소일·김영씨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 등을 처하고 안성열, 박종만 전 보도국 간부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김연옥 기자에게도 신문편집국으로의 대기발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측이 총회를 열어 파업을 결의하고 파업에 돌입하자 회사는 바로 이들을 업무 방해로 고소하여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였다. 1월 24일 경찰은 농성조합원 29명을 연행했고 이 중에서 노광선·강기석·서명석 조합원을 구속하고 나머지 26명은 불구속입건하였다. 이전에 해고된 3인 외에도 회사는 조성환(32세, 보도국사회부), 김선옥(32세, 여, 보도국사회부), 전광출(31세, 보도국사회부), 김승일(23세, 보도국사회부), 방대수(35세, 편성제작국 편성부)씨 등을 해고처리하고 25명에 대해 정직, 감봉, 견책처분을 내렸다. 거의 씨를 말리는 노동조합 와해작업이었다.

(2) 경찰의 비호 속에 이루어진 노동조합 와해 — 삼진토탈패션

구로공단 소재 삼진토탈패션은 중소규모의 섬유업체에서 노동조합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량 등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하면서 하청 분할, 해고, 구속 등으로 노동조합을 와해시킨 예이다.

1991년 4월 17일에 결성된 노동조합은 제대로 활동해 보기도 전에, 수십 벌의 바지가 같은 위치에 가위집이 난 채로 발견된 사건이 계기가 되어 급격하게 무너져내렸다. 회사측은 이 사건을 노동조합이 불량률을 선동했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그 공정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경찰은 이들 전원에 대해 조사를 벌였고 불량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지을 것이라는 소문에 야간학교에 다니던 노동자들 30여 명이 노동조합을 집단탈퇴하거나 퇴사하였다. 그 후에도 회사측의 폭행으로 조합원이 뇌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는 일 등이 생기고 간부들도 많이 다쳤지만 회사측은 오히려 다친 사람들이 때렸다고 역고소하였다. 이로써 매일 경찰서로 불러다니며 조사를 받는 등 경찰조사에 의한 탄압도 노동조합 와해에 큰 몫을 하였다. 결국 노동조합 결성 후 4개월 만에 위원장, 쟁의부장, 조사통계부장이 구속되면서 노동조합은 와해되었다. 노동조합 탈퇴압력이 계속되어 노동조합원들은 모두 회사를 나갔고 회사는 모두 하청으로 분할 재가동하고 있다.

(3) 노동조합 탈퇴압력으로 노동조합 부인 — 포항제철

우리나라 굴지의 산업재벌인 포항제철에서 1990년 민주화를 외치며 당선된 박근혜 위원장(37세)의 출범은 노동조합운동의 지반이 바뀌는 일로서 반갑게 받아들여졌다. 회사와 노동조합은 1990년 1월 단체협약사항의 하나였던 환경개선사업을 실행하여 전문연구기관에 작업환경 측정을 맡겨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개선키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 서울대 보건대학원 산업보건연구실팀이 실시한 조사 결과 발암물질인 코크스오븐배출물(COE)이 작업장에 따라 허용기준치의 10~60배까지 검출되었으며 해당부서 근로자의 10%가 직업성질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의심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제철 쪽은 이 보고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취하였고 노동조합측은 이를 인정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규탄대회와 준법투쟁을 벌였다. 그러자 회사

는 노동조합원 4명을 징계하고 2,100여 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였다. 그리고 이 파동 이후 회사는 집요하게 노동조합 탈퇴공작을 펼쳐나갔고 집행부 중 한 명의 뇌물수수사건으로 곤욕을 앓고 있던 노동조합은 이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힘이 없었다. 1만 8,800여 명의 조합원 중 1만 2,000여 명이 탈퇴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민주노동조합의 기치를 내걸었던 박군기 위원장은 2월 20일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인천지역의료보험조합도 노동조합원들을 상대로 회유와 협박을 하면서 노동조합 탈퇴를 공공연히 요구한 경우이다. 동구 의료보험조합 총무과의 한 간부직원은 노동조합원들을 불러모아놓고 “노동조합 탈퇴자는 승진심사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보사부 업무감사 때 노동조합원의 업무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 징계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등 회유와 협박을 동시에 하였다. 그러한 활동은 곧 효력을 나타내어 10월 26일에는 사업조합 총무과에서 보낸 것으로 파악되는 노동조합원 9명의 탈퇴서가 우편으로 노동조합에 접수되기도 하였다. 사업조합측의 이러한 공작으로 인해 1990년 5월 9일 총회 때 244명이던 노동조합원 가운데 155명이 탈퇴하여 89명만 남아 사업조합측의 탄압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4.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1991년은 1990년에 이어서 ‘생산직 취업 기피현상 우려’가 현실화하고 증폭되어 외국인 노동력의 상당수가 불법적이든 합법적이든 들어와서 취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어버린 해였다. 그러나 업종전환이 일어나는 감원, 중소기업의 도산과 전자업체를 중심으로 연쇄적으로 일어난 부도 등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고용불안도 급격히 확산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1991년에는 연초의 코리아타고마 체불사태에서부터 시작하여 체불임금이 전년도보다 120억 원 이상 늘어나는 등 체불사태가 급증하여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늘고 있다. 1991년 12월 7

일 현재 전국 사업장의 체불임금액은 95개 업체, 169억 원(근로자 1만 9500여 명분)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30개 업체 48억 원(3,800여 명분)보다 무려 250%나 증가한 것으로 노동부 조사결과 나타났다(자료 5 참조).

또 중소기업의 휴·폐업문제도 심각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2만 71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8월중 중소기업 조업상황조사’에 따르면 1991년 8월 말 현재 휴업체수는 268개 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3개보다 45개 사가 늘어났다. 전체 휴업체 중 55.85%가 판매부진 및 자금난으로 휴업했고 16.5%가 계절적인 요인 및 시설정비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인 문제는 휴·폐업 등으로 인해 고용불안 상태에 빠진 다수의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인 구제책이 없고 다만 사용주의 처분에만 맡기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난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이들이 원하는 것은 여자노동자일 경우 사회경험이 없는 졸업생들만을 원하고 휴·폐업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은 고용하지 않고 있어(특히 노동조합이 있었던 곳에 다닌 노동자는 영락없이 블랙리스트감이다) 이들의 안정적 재취업은 상당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노동자의 경우도 업종전환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에서 감원당했을 경우 재취업을 위해서는 재교육이나 이제까지의 경력이 어떤 식으로든 인정되어 임금조건의 하락을 막는 조치 등이 필요하나 이것이 모두 전무한 상태이다. 정부의 무차별적인 업종전환이나 구조조정만을 위한 정책, 중소기업의 편에 선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실질적인 주역인 노동자들의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정책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시급한 현실이다.

그러나 고용불안과 함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고용불안이 격화할 때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은 실과 바늘귀가 되어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코스모스전자의 예에서 보이듯이 의도적으로 부도 등의 고용불안사태를 발생시켜 노동조합 와해를 노리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1) 임금체불을 빌미로 한 노동조합 와해 사태

코리아타코마 조선공업(주)은 방위산업체로서 경영악화로 체불을 계속하다 1990년 8월부터 회사정리 절차를 개시하여 법정관리로 넘어간 회사이다. 1990년 9월부터 시작된 6개월 간의 임금체불로 극도의 생계압박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인수자로 나선 한진그룹은 처음에는 마창노련 의장을 겸임하고 있던 현 이홍석 노동조합 집행부의 사퇴없이 회사를 인수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노동조합측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조건이었지만 설을 앞둔 조합원의 체불임금 고통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여 2월 11일 노동조합은 집행부 총사퇴를 결행하였다.

그러나 집행부 총사퇴와 함께 내건 6개항에 합의한 다음날 회사법정관리인인 신덕씨는 합의서를 번복하고 “전노협, 마창노련 탈퇴 없이는 체불임금 청산이 불가능하다”라며 상황을 다시 악화시켰다. 또 회사관리자들은 조합원을 상대로 전노협, 마창노련 탈퇴서명작업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평균연령이 39세이고 절반 이상이 40대를 넘어선 이들에게 체불로 인한 생계압박은 심각한 것이었다.

2) 하청 분산

마포구 성산동에 있던 지비전자는 노동조합이 설립된 1989년 이래 임금상투쟁 때마다 위장폐업을 해왔다. 1991년 6월 13일에도 노동조합이 조합원 92%의 찬성으로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는 같은 달 25일 세번째 위장폐업을 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하청을 계속 남에게 주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물량을 주지 않아 일감이 없어 문을 닫는다는 회사측의 폐업사유는 설득력이 없는 것이었다. 노동조합원들은 회사에서 계속 항의농성을 벌였으나 회사건물의 임대기한이 만료되어 7월 1일 거리로 쫓겨났다.

3) 부도

인천지역 소재 코스모스전자에서는 1991년 2월 22일 부도가 발생하였다. 7억 200만 원의 부도가 발생했던 이 회사의 경우 위장부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받았다. 1991년 단체협약을 둘러싸고 보여준 회사측의 비타협적 태도(부도설 유포, 개약안 제시)와 부도 당일 당시 자산이 부채를 상회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의심을 산 것이다. 그러다가 노동조합원들이 본사인 코스모스백화점 사무실을 점거농성중 발견한 문서에 의해 이에 대한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제공되었다. 문제의 문서는 코스모스전자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제목을 붙여 한국상업은행 총재 앞으로 발송하기 위해 작성, 회사대표의 결재까지 맡아놓은 문서로서, 그 일부를 보면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폐사에서는 1991년 3월 30일까지 자금준비를 완료하여 전직원에 대한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일괄지급하고 있으며 전종업원의 90% 이상이 4월 3일까지 퇴직처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어 무안공장을 재가동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될 것입니다” “4월 8일 무안군청에서 무안군수, 전라남도 공업과장과 함께 협의회를 개최해 별도 법인설립 가동 및 공장부지 명의 이전 승인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었다. 부도를 내기 전 회사측은 “말 잘 듣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면서 1990년 12월부터 진행된 단체교섭을 기피했고 부도를 낸 후에는 관리직 사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하면서 회유와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위장 부도임을 널리 알리고 강하게 싸워나갔으나 결국 회사는 정상화되지 못하였고 보상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났다.

명성의 경우는 이보다 더욱 노골적이어서 조합에 비치되었던 서적이 문제가 되어 핵심간부 전원이 해고된 후 몰아친 부도로 인해 회사는 정상화되었지만 노동조합이 와해되어 현재는 유일한 간부이자 상근자인 위원장만을 남겨둔—그나마도 거의 노동조합사업을 행하지 않는—이름뿐



▲ 국회 앞에서 시위중인 코스모스 조합원들

인 노동조합으로 남게 되었다.

한편 상장기업이면서 구로지구의 큰 사업장 중의 하나였던 백산전자는 8월 31일 부도를 낸 이후 회사정상화 방안을 내놓기보다는 그동안의 책임을 노동조합측에 돌리고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하는 데만 급급해 아직도 노동자 대부분이 체불임금도 받지 못한 채 회사에서도 쫓겨나 추운 겨울에도 싸움을 계속하였다. 1천여 명이 고용되어 있던 백산전자는 회사의 신주력업종이던 팩시밀리가 관리능력과 시설부족으로 클레임에 계속 걸리자 경영상의 위기에 처했고 급기야 부도를 냈다. 노동조합은 회사정상화를 위해 경영진이 책임있는 경영방침을 밝히면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지만 회사는 노동조합을 배제하기에만 급급하여 부도 발생 7개월이 지난 후에도 합의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1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4) 폐업

삼미금속 진주공장은 1월 15일 정식으로 폐업을 통고하였다. 회사는 그동안 경영적자를 이유로 진주공장을 닫고 조합원 300여 명에 대해 “12월 15일까지 퇴직금과 통상임금 3개월분 지급을 조건으로 자진퇴사하라”며 이를 거부할 경우 1990년 11월 17일부터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약 7억 원) 조합원들에게 배상 청구하겠다고 말해 230명이 자진퇴사하였다.

삼미그룹 계열사인 삼미금속은 1982년 3백억 원 규모로 출발, 1989년에 1천 8백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매출액을 올릴 정도로 자산을 늘려왔으며 특히 진주공장의 경우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적자도 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마포구 소재 고려시스템의 경우는 30여 명의 노동자 모두가 아무 것도 모른 채 일하다 갑자기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야 했다. 컴퓨터 단말기를 만드는 이 회사는 1991년 4월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을 한다면서 경영상대가 나쁜 동양정밀을 인수한 후 계속 부실화하여 동양정밀의 빚보증 732억 원을 포함한 이 회사의 총부채 1,446억 원을 감당 못해 법

원에 파산신청을 냈고 법원은 파산선고를 하였다.

5. 노동자의 자살

1991년에는 노동자의 분신 외에도 강경대 타살 이후 이에 항의하는 분신이 잇달았던 해이다. 빈번한 분신과 배후세력의 의혹을 받았던 유서대 필사건 등이 확산되면서 분신 등의 행위는 사회적 파급 대신에 심한 냉소와 경멸을 낳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분신 또한 계속되었다. 사회적으로 작은 반응도 못 만들어내는 분신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억울함이 주 원인이었다. 힘없는 노동자가 사용자나 공권력의 탄압과 횡포에 대항하지 못하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하는 분신이 1991년에도 계속 발생했다는 것은 사용자의 탄압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 1991년 말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권미경씨의 자살은 경제난을 선전하면서 그 책임을 노동자의 게으름 탓으로 매도, 5 더하기 운동 등 문제를 노동자의 임금동결과 노동강도의 강화, 노동시간의 연장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권씨의 자살은 현재의 노동자의 위치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와 함께 노동조합자의 권익을 대변하지 않는 어용노동조합의 일방적 협상결과에 반발하여 자살한 경우가 몇 건 있었다.

1991년 노동자들의 자살일지는 다음과 같다.

1991. 5. 9 진주 마일택시 조합원 박덕용(31세)씨, 경찰과 노동부의 노동자 탄압에 항의하며 음독, 분신자살 기도

5. 10 피혁공장 노동자(23세) 윤용하씨, 광주 전남대 교정에서 노태우정권에 항의하며 분신자살

6. 8 인천소재 (주)삼미기공 노동조합 홍보부장 이진희(28세)씨, 노동조합의 일방적 임금타결에 항의, 분신자살

6. 8 광주 남진택시노동조합 위원장 강대식(35세)씨. 회사의 단체협약협회사 항 일방적 파기에 분노, 분신자살 기도

6. 15 인천시 서구 공성교통노동조합원 석광수(30세)씨, 파업중이던 노동조합원의 무더기 연행에 항의, 분신자살

6. 21 인천 우신기공의 김경렬(23세)씨,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아 분신자살 기도

7. 15 만도기계 원주 문막공장 조합원 이용수(23세)씨, 해고자문제의 해결 없는 협상안에 분노, 분신자살 기도

11. 20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신도시 극동건설 현장 목수 박갑영(23세)씨, 임금체불에 항의하다 분신자살 기도

12. 6 부산 사하구 대봉의 근로자 권미경(23세)씨, 일 더하기 운동에 항의하며 투신 자살

1) 일방적 임금타결에 항의 분신한 이진희씨

1991년 6월 8일 오전 9시 30분경 (주)삼미기공노동조합 홍보부장 이진희(28세)씨가 임금인상보고대회 도중 노동조합측의 타결안에 분노하여 분신, 90% 이상의 화상을 입고 분신 8일 만인 15일 오전 9시경에 한강성심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4월 11일부터 시작된 임금교섭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이 회사측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타결짓고 보고를 하자 노동조합 간부로서 집행부의 어용성에 분노하고 있던 이진희씨가 결국 분신을 감행한 것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의 분노를 더욱 산 것은 회사의 태도이다. 병원에 찾아와 가족들에게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회사에서는 분신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조용히 수습하자”고 회유했고 일부 신문에는 개인적인 불만으로 분신한 것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또 분신한 이진희씨를 인천시립병원에 4시간 동안 방치하고 길병원에서도 1시간 여 동안 복도에 방치하고 치료를 하지 않았으며,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긴 후에도 병원응급실에 눕혀 놓고 담당의사로 하여금 치료하게 하지 않는 등 인명을 경시하는 병원들의 무성의한 태도도 문제가 되었다.

해명서

뜨거운 피로 인생을 살아온 우리의 이진희 사우가 1991년 6월 8일 오전

9시 40분 임금인상협약타결 결과보고대회 도중 인상폭이 적은 데 분개하여 분신 사망하였습니다. 저희 인천 공장 전직원 일동은 비통한 마음을 간직한 채 진상규명과 장례절차에 대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일간지에 개인적 신상문제를 비판, 분신 운운한 보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것임을 확인하며 우리 모두는 죄스러운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1991. 6. (주)삼미 인천 가공 공장 전직원 일동(『한겨레신문』 1991년 6월 10일자)

2) 일 더하기 운동 속에 죽어간 젊은 여공 권미경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나를 이 차가운 땅에 묻지 말고 그대들 가슴속에 묻어주오. 그때만이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으리. 인간답게 살고 싶었다.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마라. 내 이름은 공순이가 아니라 미경이다.

1991년 12월 6일 오후 4시경 신발제조업체인 (주)대봉(대표 조우준,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497번지)에서 미싱사로 근무하던 권미경(22세)씨가 회사 3층 옥상에서 투신하였다. 위 글은 권미경씨가 왼쪽 팔뚝에 검은색 볼펜으로 적은 유언이다.

(주)대봉이 위치한 신평지역의 경우, 주종산업이 고무, 신발 등 소위 한계산업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고무, 신발업종은 최근 라인폐쇄, 업종 파탄, 해외이전 등으로 고용을 감축하며, 그 이유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 심지어 노동시간을 무려 3시간이나 연장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토요일에도 정상근무를 시키는 등 '구사운동'의 폐해는 또다시 1987년 이전의 노동자상태로 돌아가기를 강요하고 있다.

3,500명 규모의 신발제조업체인(주)대봉 역시 생산물량을 채우기에 급급해, 식사시간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강제잔업도 다 반사였다. 이 회사는 11월 1일부터 노동조합의 협조하에 전체 사원이 '하루 30분 일 더하기 운동'을 모방한 '원가절감, 결근방지'라는 리본을 달게 하는가 하면, 목표량 달성을 위하여 노동자들의 작업강도를 강화해 왔다.



▲ 권미경씨의 팔뚝유서

12월 들어서는 관리자들이 초시계를 들고 다니면서까지 목표량 달성을 요구하였고, 권씨가 숨진 당일인 6일 오전에도 조장이 불량률 이유로 산업체 야간학교에 다니던 여성노동자를 심하게 질책한 일이 있었다. 이를 본 권씨는 주위의 동료들에게 "지옥이 따로 있느냐? 이곳이 바로 지옥이 아니냐"며 비인간적인 대우에 울먹었다고 한다.

결국 권씨의 죽음을 몰고온 것은 '회사 살리기 운동'이며 현재의 경제 위기를 모두 노동자 탓으로 돌리고 '원가절감, 결근방지'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모순된 현실에 있다.

3) 노동조합원의 무더기 연행에 항의 분신

파업중이던 노동조합원의 무더기 연행에 항의, 분신자살을 기도하여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오던 인천시 서구 가좌동 602 (주)공성교통(대표 윤재원) 노동조합원 석광수(30세)씨는 분신 9일

만인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숨졌다.

석씨는 6월 15일 회사 정문에 '1991 임투승리' 현수막을 내걸던 중, 이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 박용주(30세)씨가 이를 가로막자 "동료 노동조합원이 무더기 연행됐는데도 앉아만 있느냐"며 회사 정비창고로 가 온 몸에 시너를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전신 58%의 중화상을 입고 이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인천지역 택시노동조합은 지난 4월 17일부터 사용자조합 쪽과 아홉 차례 임금교섭을 가졌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14일 노동조합원 1,200여 명과 차량 1천여 대를 동원, 차량시위를 벌이다 최 지부장 등 노동조합원 217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6.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탄압

여성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탄압은 단순한 개별폭행이나 성적 모욕 등 여성의 성적 차별을 이용한 탄압이 반복해 나타나고 있고 여성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불리한 조치들이 자행되고 있어 사용자들이 여성노동력을 싼값의 단순노동력으로만 사용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또 시간제 근로여성이 늘고 있으나 제도는 오히려 이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적 보호조항마저도 삭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제조업체의 부당 휴·폐업에 따른 여성노동자들의 대량해고와 감원 등이 잇따라 불안정한 여성고용이 더욱 흔들리고 있다.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1988년부터 1991년 8월까지 4,836개 사업장이 휴·폐업했고, 이로 인한 실직자수는 16만 3,091명에 이른다. 휴·폐업은 산업구조조정에서 경쟁력 약화사업으로 분류되는 신발, 완구, 섬유, 일부 가전제품 등 여성중심 업종의 중소기업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휴·폐업에 의한 고용불안이 주로 여성노동자에게 집중되어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생산직 제조업체마다 인력난이다, 구인난이다 하면서도 여성노동자는 해고의 경험이 없는 20살 미만의 여성만을 위해 외국기업 철수, 휴·

폐업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여성들이 취업할 곳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여성노동자가 중심을 이루는 사업장의 노동조합활동은 일상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체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여성노동자들은 어떤 투쟁에서도 늘 관리자나 남자사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들의 호소는 경찰에서 처리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 반복되어 폭력사태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1) 반복되는 성폭행 사례들

여성중심 사업장의 노동조합원들은 너나할 것 없이 일상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성적인 차이를 악용한 욕설과 추행 등의 성폭력이 계속 자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 청주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청주 AMK노동조합의 경우, 4월 10일 노동조합측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임금인상투쟁전진대회를 몇 시간 앞두고 회사측의 사주를 받은 폭력배들이 술에 취한 채 노동조합사무실에 들어와 책상, 전화, 복사기 등 집기를 부수고, 조합 사무국장 이성우씨에게 예리한 흉기로 협박까지 하였다. 오후 6시 20분에는 박미순씨가 노동조합 총회에 참석하려고 회사에 들어가려 하자, 10명의 관리자들이 몰려와 박미순씨의 머리채를 잡고 정문 밖으로 끌어내고는 소주병을 깨어 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박미순씨가 강력히 항의하자 이들은 그녀를 들어올려 맨땅에 내다꽂아 실신시켰다. 그런데 폭행한 사원들은 회사측 노무관리과장 대리 마인섭(1990년 민주노동조합 건설 이후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하여, 삼립식품에서 회사측이 스키아웃해온 사람)씨가 특별히 채용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인근사업장 뉴맥스의 경우를 보면 3월 16일 위원장으로 출마할 예정자들을 회사측은 해고를 시켰다. 이에 이들이 출근투쟁을 벌이자 정문 앞에서 관리자 40여 명이 목을 조르고, 발길질을 해대면서 깨진 유리병 위에 깔아뭉개는 등 집단폭행과 함께 "××에 말뚝 박을 년! 어제 저녁에 ×박고 온 년이 뭐하러 왔어"라는 등 입에 담기 힘든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4월 16일에는 출근투쟁중에 위원장 선거공고에 따라 위원장 등록

서류를 받으러 이들 2명이 회사에 출근하자 관리자들이 스크럼을 짜고 1시간 30여 분 동안 구타를 하여 김은미, 김복순씨의 팔을 비틀고 손바닥으로 아랫배를 걷어차 장을 다치게 했다.

한편 1991년 2월 5일 제주지방법원 2호법정에서는 제주 서울호텔사장 김학송씨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이유로 사용자가 처벌은 고사하고 재판이라도 받는 것은 워낙 이례적이라 눈길이 간 사건이었다. 그만큼 재판부마저도 묵과할 수 없을 만큼의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다. 신은숙씨(23세)는 1989년 5월 제주 서울호텔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부위원장, 위원장 직무대리로 열심히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회사측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서명을 기피하는 등 간접적 탄압을 일삼고 계속 임금을 체불하였다. 또 회사측은 남녀노동자 휴게실을 방으로 개조하여 판매해 버렸다. 이에 현장보존을 위해 사진촬영하던 신은숙씨가 간부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신은숙씨는 1주일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받고 일주일 결근계를 제출하고 결근을 하였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신씨를 해고하였다. 해고장을 받기 몇 시간 전, 신은숙씨는 회사간부로부터 떡살을 잡히고 로비에 내동댕이쳐져 안경이 깨졌다. 신은숙씨가 억울해 울고 있는데 대표이사가 영입과 사무실로 불렀다. 일개월치 봉급을 더 줄테니 사표를 쓰고 나가라는 것이었다. 그럴 수 없다고 완강히 버티자 간부를 시켜 휴게실로 가서 신은숙씨 옷을 가져오게 하고는 대표이사를 비롯 여러 간부들이 보는 자리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라고 하였다. 기가 막혀서 멍하니 서 있는 신은숙씨에게 회사 간부들이 계속 협박을 하면서 "너 같은 년은 필요없어, 빨리 옷 갈아입고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심한 공포에 질린 신은숙씨는 옷을 갈아입고는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여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다. 정신을 잃자 동료여직원이 와서 일으켜 주었다. 그런데도 대표이사는 계속 빨리 옷 갈아입고 나가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간부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아래옷까지 갈아입어야 하였다. 이때의 충격으로 신은숙씨는 서동용 신경과의원에서 한동안 투약 및 치료를 받았다.

2) 여성 장기근속자에 대한 무더기 부서이동

광주가든백화점이 81명의 여성 장기근속자를 무더기로 부서이동시켰다. 노동조합측의 주장에 의하면 이는 자연퇴사를 노린 음모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지금까지 장기근속자가 타부서로 부서이동되면 신입사원으로 지위가 하락하여 새 업무파악에 따른 고충과 타부서의 분위기에 적응해야 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이 시달리다 자연퇴사했다는 점, 둘째, 1991년 단체협약 체결시 퇴직금 누진제 및 장기근속자 수당인상 등 장기근속자의 임금이 많이 지출된다는 점, 셋째 1989년부터 이직률이 낮아지고 주부사원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넷째, 3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대부분이 노동조합 핵심간부들로서 1991년 파업투쟁의 주체인 점, 다섯째, 부서이동 대상이 전부 여성이며 또 법률 및 단체협약에도 규정되어 있는 바대로 임신중인 주부사원은 더욱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해야 함에도 임신중인 사원을 감당하기 힘든 부서로 배치한 점 등 자연퇴사를 노리는 성차별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1990년 매출액 약 540억 원(1989년 대비 34.5% 신장)이나 되는 등 여성 장기근속자들이 회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에도 주부사원, 임신중인 사원들을 내쫓기 위해 부서이동이라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취업한 여성노동자들이 결혼이나 임신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퇴직을 강요받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사무자동화와 경영합리화를 추진하면서 감원이 불가피해지는 사업장의 경우 기혼 및 장기근속 여성노동자가 제일 먼저 그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일부 증권회사의 경우 불황시에 기혼 및 장기근속 여직원에게 전혀 경험이 없는 영업직을 맡겨 실적이 부실하다는 압력을 주어 퇴사를 유도한 사례도 있다.

3) 임시직이나 시간제 여성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현재 시간제 노동을 하는 여성의 수는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경제기획원 통계에 따르면 1989년 8월 현재 주당 36시간 미만의 노동을 하는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22만 7천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전체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59.1%씩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이며 해마다 20%씩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우는 처음에 임시직으로 채용하고 결혼·임신시 재계약을 중단하는 사례이다. 보험업종의 경우 전체 여직원의 30~40%를 용역으로 고용하고 있는 업체도 두 군데나 있고, 이 중 한 직장은 여직원의 50%를 임시직으로 채용, 동일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임금은 정규직의 60%만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 1991년 11월 8일 노동부는 시간제 근로의 도입시행령에서 여성이 70~80%를 차지하는 시간제 노동자들에게 산전산후·월차·생리휴가 등을 주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법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여성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고 모성기능 파괴를 전제로 해서 단순히 기업가들의 효과적인 노동력 수탈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법적용 기준은 시간제 노동자에게 휴가, 휴일적용 제외라는 노동조건 개악을 근본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의 기준대로 시행될 경우 여성고용 확대는 될지 모르나 여성의 저임금화, 전체 여성의 고용불안정이 계속될 것이다.

자료 1

조합원 성향군별 분류

대분류	소분류	인원	명단
			조합간부
핵심조합주의자	정치적 조합주의자	19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장, 회계감사
	경제적 조합주의자	31	대의원
중도파	군중심리에 편승	34	
	기회주의적 성향	16	대의원, 대의원, 조동부장
합리주의자	울고 그름의 상황판단	12	
업무충실파 (소신파)	조합활동 자체에 불신을 가지고 있음	3	
계		115	
비고	<p>불법사찰 자행하는 관리자는 자폭하라! 1990년 10월 "윤석양 이병의 보안사 사찰폭로" 사건으로 온 민중이 치를 떨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한많은 반도에 또다시 민중의 일거수 일투족이 감시당하는 사찰만능의 공작 시대가 도래했다는 현실에 몸서리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서비스(주)에도 그러한 사찰음모가 은밀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경악할 사건 앞에 끓어넘치는 분노를 누를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노사화합, 사원을 가족같이, 대등한 노사관계 운운하면서 선량한 조합원 동지들을 기만하여 온 자본가 본연의 마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지난 1989년 가을과 1990년 봄에 각 지부 간부 및 조합원들에 대한 신원조회가 본적지에서 실시되었던 사실은 바로 전조합원에 대한 회사의 사찰이 진행되기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신원조회를 바탕으로 1990년 2월 조성훈 전주 지부장을 전격 구속시켰고, 급기야는 해고까지 하는 등 저들의 야비한 술책이 거리낌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p>		

‘한 해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면서 새해에는 보다 나은 경영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라고 지난해 노사 간담회석상에서 사장은 공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작태입니까?

조합원 동지 여러분!

회사는 양의 탈을 쓴 이리의 흉계 속에 전조합원을 ‘조합원 성향군별 분류’라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여 왔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조성훈 진주 지부장과 같이 구속, 해고시키려 작정하였음을 우리는 간파하였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을 범죄자 취급하는 저들의 만행으로 보건대 사원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조합을 대등한 입장으로 보면서 수레의 한 바퀴로 생각한다고 천명한 대표이사, 사장의 얘기는 도저히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간악한 음모를 분쇄하지 않으면 저들은 오히려 조합원 동지 여러분에 대한 사찰 만행에 더욱더 혈안이 되어 날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제 떨쳐 일어나 나아갑시다!

고 한 손에는 사랑을, 또 한 손에는 분노의 칼을 들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회사와 단란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섭시다. 우리는 회사를 아끼는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노동자를 경악케 한 이번 사찰 전을 기회, 집행한 책임자는 스스로 퇴진할 것을 력히 촉구한다.

만약 이를 스스로 시행치 않으면 전조합원의 이름으로 가차없이 처단할 것임을 확실히 밝힌다.”

자료 2

서명 사업주 명단

회사명	사업주	회사명	사업주
한국 아프리카 마그네틱스	대표이사 한무남	갑일전자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박창호 " 황희선
서울엔진베어링제작소	대표 이윤창	영창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신한발브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전상직	한록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세태
백산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석영	천지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종성
주식회사 상미	대표이사 은성도	풍우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부영
주식회사 원림	대표이사 신용우	주식회사 태광하이텍	대표이사 박승순
주식회사 요업개발	대표이사 정세	주식회사 일신통신	대표이사 홍옥수
삼선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을	한국케이디케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형유
중원전자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종섭	동국실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최승주

자료 3

대구지방 노동청 국정감사

1991. 9. 26. 오후 3시 30분

이상수(민주당) 대구염색공단노동조합이 공단측에서 염색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일으킨 사례입니다. 그러나 공단측은 오히려 보복적으로 노동조합원에 대한 음성적인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단협무효, 전임자임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 공단측의 탄압으로 노동조합이 와해될 지경입니다.

홍종달 노동청장 염색공단노동조합은 1989년 3월 15일 결성하여, 당시 187명의 노동조합원이며 1990년 3월 4일 1시간 정도의 작업거부를 하였으며, 집행부의 운영에 반발하여 노동조합원이 탈퇴하여 3명이 남아……

이상수(민주당) 청장! 단체협약경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이야기하십시오.

홍종달 노동청장 사용자측에서 현재 노동조합원이 2명이라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수(민주당) 노동조합원이 2명 남았더라도 단체교섭에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2명 남았다니! 여기 탈퇴원서가 20여 장이 있습니다(탈퇴원서 보이다). 이것은 공단측에서 탈퇴를 강요하여 담당과장이 노동조합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염색공단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십시오! 7월 30일경 탈퇴한 노동조합원이 20여 명인데도 조합원이 2명 남았다는 게 도대체 뭐요! 사용자측에서 원직복귀를 전제로 단체교섭을 해태시키고 불응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이때 염색공단노조 담당근로감독관(최경생)이 청장에게 귓속말로 속삭이며 답변하려 한다)

이상수(민주당)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답변하십시오! 당신은 선서하지 않았습니다. 선서부터 하십시오!(이때 홍종달 노동청장이 직접 답변하겠다 함)

홍종달 노동청장 염색공단노동조합은 1990년 2월 점심시간에 빵파리를 치며 쟁의를 선동했으며 3월 3일에서 3월 5일까지 작업을 거부하였고, 5월 21일 임금이 타결되었습니다. 그 후 1990년 8월 30일경 노동조합원이 3명 남았습니다.

이상수(민주당) 올해 4월 30일 6차교섭 이후, 사용자측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사용자측에서는 조합원이 없기 때문이라는데 7월에 탈퇴원서가

20명인데 조합원이 없다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노동부가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까. 노동청의 직무유기입니다. 노동조합에서 고소한 것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홍종달 노동청장 1차고소가 2월 20일이며 2차고소가 4월 23일입니다.

이상수(민주당)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답변이 질문요지와 맞지 않습니다.

홍종달 노동청장 불기소 송치했습니다.

이상수(민주당) 염색공단노동조합은 자기의 이익을 떠나 대구시민과 국민들을 위해 공단측 폐수무단방류를 폭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대구시에 서도 포상을 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노동조합이 와해 위기에 빠지고 전임자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비호하여 노동조합이 당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고소한 사건은 차일피일 미루고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청장은 노동조합이 당하고 있는 불이익을 사실대로 조사해서 신속히 처리하여 노동부본부 감사 이 전까지 조치결과를 알려주십시오.

홍종달 노동청장 조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1개월 이내로 올리겠습니다. 국회상임위가 끝나기 전까지 조치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자료 4

1) 연도별, 월별 해고노동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미확인	합계
1989	34	106	29	47	182	149	91	24	83	39	70	181	1,631	2,666
1990	86	49	25	21	179	66	75	140	53	61	43	36	130	964
1991	54	26	26	39	52	124	80	31	42				16	491

주: 1) '미확인' 란은 해고된 달을 확인하지 못한 노동자임
 2) 1989년 미확인 숫자가 많은 것은 전교조 해고자 1,522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2) 연도별, 지역별 해고 노동자

	1989. 1. 1~1991. 9. 30	1989년	1990년	1991년
서울	506	181	200	125
인천	59	0	0	59
부산	619	302	317	0
성남	136	58	73	5
경기	307	246	34	27
부산	206	104	31	71
울산	127	67	54	6
마창	141	72	37	32
거제	10	0	8	2
진주	41	3	8	30
대구	124	18	55	51
포항	61	26	12	23
구미	75	15	56	4
경주	3	1	1	1
광주	52	19	18	15
전주	62	19	32	11
대백	29	8	19	2
언론	41	5	9	27
전교조	1,522	1,522	0	0
합계	4,121	2,666	964	491

3) 현대·대우그룹 계열사별 해고노동자

	1989. 1. 1~1991. 9. 30	1989년	1990년	1991년
대우 대우엔지니어링	1	1	0	0
대우기전	10	0	8	2
대우자동차	56	0	0	56
대우전자광주	4	2	2	0
대우전자부품	8	0	0	8
대우정밀	2	0	0	2
대우조선	43	3	0	40
대우캐리어	3	1	2	0
현대 현대자동차	17	0	17	0
현대정공울산	2	0	2	0
현대정공창원	1	0	0	1
현대종합목재	8	6	2	0
현대중공업	81	46	30	5
현대건설	5	0	5	0

4) 해고자가 대량 발생한 대표적인 사업장

지역	사업체명	인원	사업체명	인원
서울	동국실업	31명	태평양화학	36명
인천	대우자동차	56명	우일	39명
부산	세라아트	40명		
부산	대우정밀	43명		
울산	현대중공업	81명		
구미	동양전자초자	40명		
포항	풍산안강지부	21명		
교원	전교조	1,522명		
인문	평화방송	27명		

5) 노동조합 직책별 해고자

직책	위원장	노동조합간부	조합원	비조합원	계
해고자	142	490	195	2	829

자료: 전노협, 「1989년 이후 조합활동 관련 해고노동자 현황」에서(1991년 9월 30일 기준)

자료 5

체불업체 명단

(1991. 10. 29)

사업체명	업종	가동여부	체불액(백만원)	사업체명	업종	가동여부	체불액(백만원)
남산운수	운수	가동	49	돈주	전자부품	중단	100
덕산기업	금형	중단	43	카스타	카부품	"	110
백산전자	전자	가동	110	동양노즐공업	기계부품	"	34
울트라세라믹	전자재	중단	28	삼일특수제지	제지	"	44
대흥기초	건설	"	140	동성상사	전자부품	"	70
이화정밀	저울	폐업	62	일승염공	섬유가공	"	28
합동통상	피혁의류	중단	238	대미산업	신발	"	235
신진산업	가방 제조	가동	17	삼원화성	"	"	67
미크론전자	전자부품	"	106	고신의료원	의료업	가동	421
광동탄광	광업	"	51	한국기전	전기제조	중단	42
중동탄광	"	중단	37	동해캐미칼	신발	"	500
기창통신	건설	"	974	일양산업	"	"	97
미양케미칼	신발	"	193	성옥산업	"	"	33
오성산업	"	"	26	아폴로제화	"	"	2,500
페리관광	숙박	"	30	(주)대정	"	"	422
화진화학	신발	"	370	태성산업	신발밀착	"	50
선영	"	폐업	698	삼광광업소	광업	가동	45
동진화학	"	"	105	기주실업	신발	중단	65
남양산업	"	"	288	금하방직	섬유제품	가동	915
동일산업	"	"	47	(주)청성	식품	중단	200
대신실업	"	"	138	천진전자	전자부품	"	35
대원산업	"	"	39	태백건설	건설	"	38
삼성교역	"	"	44	첨단EG	전자기기	"	64
천일수산	수산가공	중단	60	신흥산업	신발	"	335
미성수산	"	"	169	대한교교일보	신문발행	"	129

사업체명	업종	가동여부	체불액(백만원)	사업체명	업종	가동여부	체불액(백만원)
대미	신발	"	172	완산실업	목제품제조	"	12
진화산업	섬유	"	28	대일산기	기계	가동	39
대우공업사	철구조물	"	28	동양정밀	전자	"	690
선미산업	라디에타	폐업	313	경일화학	피혁	"	129
동보상사	목제품	"	51	베니니	의류	중단	157
금구산업	철구조물	중단	139	성광조선	선박	"	88
금구건설	"	"	52	청신정밀	금형	"	103
한국기전	도금	"	17	한국원전자	전자부품	"	285
성산금속	금속	"	304	신성기계	기계	"	69
(주)선일	전자부품	"	277	영남실업	스웨터	"	24
대원정밀	시계	"	103	나드리유통	판매서비스	"	474
명진기계	금속부품	"	157	부광물산	섬유제조	"	970
영암	기계부품	"	157				

제 3 장 산업재해

1991년은 직업병에 걸려 제대로 판정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해버린 한 노동자의 죽음으로 시작된 한 해였다. 원진레이온 김봉환씨의 죽음은 돌발적인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땅의 빈발하는 산업재해 현실과 이윤추구에만 관심이 있는 사용자들의 경영풍토와 노동자의 건강과 복지는 외면하고 사용자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노동부의 정책 부재와 관리감독 소홀이 불러온 필연적인 죽음이었다. 단순히 직업병에 의한 사망이라기 보다 이의 인정을 둘러싼 제반 제도적인 폐해로 인한 죽음이었던 김봉환씨의 사망은 그동안 산재자들이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을 단적으로 이 사회에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쇠파이프 정권, 독가스 정권”이라는 국민들의 구호에서도 보이듯이 1991년은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와 사회적인 여론, 누적되어 왔던 산업재해(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투쟁주체들의 노력으로 산업재해와 관련된 제반 제도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어낸 한 해이기도 하다.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 싸웠던 산업재해 문제를 임금인상 투쟁, 단체협약 투쟁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이 중요하게 인식하고, 노동자 자신의 건강문제를 집단적으로 제기하게 될 정도로 성장했음이 두드러진 한 해였다.

그러나 이러한 괄목할 만한 제반 정책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 김봉환씨 직업병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원진레이온 가족들

는 여전히 문제들이 온존했고, 때로는 후퇴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1991년의 『노동인권보고서』에서는 개선된 정책의 허구성과 1991년에 나타난 산업재해 사고의 특징을 살피고, 김봉환씨로 인해 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된 직업병을 판정받게 되기까지 산재자들이 겪게 되는 제반 장벽들을 중심으로 진단해 보았다.

1. 산업재해 실태

1) 1991년 산업재해의 현황

(1) 사고성 재해

1991년 한 해에도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가 1990년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발생하였고, 1991년 상반기 동안 총 6만 2,324명의 재해자가 발

〈표 1〉 1991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 분석

연도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수	재해율(%)
1988	5,743,970	142,329	1,925	2.48
1989	6,687,821	134,127	1,724	2.01
1990	7,542,752	132,893	2,236	1.76
1991(상반기)	7,490,301	62,324	1,045	0.83

주 : 1991년 전체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 1991년 상반기(6월까지) 통계만을 수록하였다.
 자료 : 노동부, 1991년 8월 발표

〈표 2〉 다른 나라와의 재해율 비교

	한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재해율(천인율)	1.76%(17.6)	0.57%(5.7)	0.7%(7.0)	0.93%(9.3)
기준 연도	1990	1988	1987	1986

주 : 재해율=재해자수/근로자수×100, 천인율=재해자수/근로자수×1,000
 자료 : 전노협, 1991년 11월 22일 기준

생해 하루 평균(연 300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415명의 재해자와 7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표 1 참조).

이는 1990년과 여전히 같은 수준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여전히 높은 재해 위험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표 2 참조).

산업재해를 업종별로 나누어본다면 1991년에도 여전히 광업이 으뜸이며, 업종별로는 1990년도와 큰 차이 없이 건설업과 광업에서 각각 11%, 22%씩 증가했음이 눈에 띈다. 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중대 재해가 늘고 있는 양상이다. 이같은 중대 재해의 증가는 건설업에서의 사망재해가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광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가운데 100명 중 5~6명이 재해를 당하는 비율로 나타나 광산 노동자의 참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표 3 참조).

〈표 3〉 업종별 재해자수

업종	1990 상반기			1991 상반기			증감 1990상반기 대비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	
계	7,318,224	65,122 (1,025)	0.89	7,490,301	62,324 (1,045)	0.83	6.74 감
광업	90,508	4,173 (210)	4.61	59,528	3,352 (198)	5.63	22.13 증
제조업	3,544,773	35,237 (304)	0.99	3,591,355	30,464 (262)	0.85	14.14 감
전기 가스 수도업	39,600	120 (2)	0.30	49,293	100 (4)	0.20	33.33 감
건설업	2,295,138	16,319 (260)	0.71	2,423,097	19,082 (344)	0.79	11.27 증
운수 보관 창고업	620,105	6,022 (164)	0.97	591,361	5,693 (153)	0.96	1.03 감
기타 산업	728,100	3,251 (85)	0.45	775,667	3,633 (84)	0.47	4.44 감

자료 : 노동부 발표, 「1991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 분석 및 대책」

(2) 직업병

가. 통계

1990년 직업병 유병률은 0.22%로 1989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¹⁾ 직업병 환자도 여전히 진폐증, 소음성 난청순으로 나타났으며 1989년에 비한 특징으로는 납중독 환자가 3배 정도 증가했음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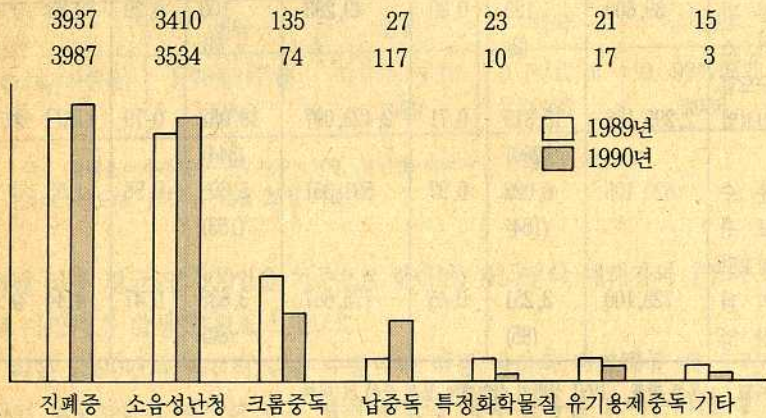
1) 1991년 통계는 1992년 8월에야 나오므로 올해 인력보고서에도 1990년 통계를 수록하였다. 통계는 1990년 통계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은 1991년에 보고된 사례를 서술하였다.

〈표 4〉 연도별 노동자 건강진단 실시 현황

구분 연도	사업장수		근로자수		질병자수		
	대상	실시	대상	실시	계	일반질병	직업병
1989	95,931	77,677 91.0%	3,938,573	3,467,135 88.0%	86,459 2.50%	78,891 2.28%	7,568 0.22%
1990	107,155	88,155 82.2%	4,406,473	3,529,516 87.2%	87,784 2.49%	80,042 2.27%	7,742 0.22%

자료 : 노동부, 1991년 8월 발표

〈표 5〉 직업병 유소견자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1

진폐증과 소음성 난청은 한 번 걸리면 치료되기 힘든 병이다. 그런데 소음성 난청 등은 보호구 착용 등으로 조금만 신경을 써도 줄어 들 수 있는 직업병인데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은 직업병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노동부 발표에서 3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납중독은 영세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대기업을 유해물질 취급부서의 하청화로 인해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이 더더욱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나. 사례

진폐증 현재까지 3만 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진폐증 환자들이 1990년에는 3,987명이나 발생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들 중 사망자는 255명이나 되고 1991년 9월까지 17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²⁾ 불치의 병이라는 진폐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국진폐재해자협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도 최근 3년 간 1,106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나 1년에 300명, 하루에 1명꼴로 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³⁾ 우리나라 직업병 환자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진폐증은 이러한 사망자 문제뿐 아니라 장기 입원자의 고충문제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1991년에는 중증의 진폐증상을 보여도 정상이라고 판정이나는 노동부 지정 검진기관이 문제가 되어 탄광지역의 노동자 200여 명이 집단으로 상경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의 다른 병원에서도 진단한 결과가 노동부 지정병원에서 내린 검진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 광원들의 진폐증을 노동부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기도 하였다.

소음성 난청 1991년에는 1990년에 납중독으로 문제가 되었던 한국통신 전화선로 보수 전람원들에게서 소음성 난청 직업병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전화케이블 연결작업 도중 10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심선대조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에 걸릴 위험이 많았던 것이다.

또 대우자동차에서도 직업성 난청이 발견되었는데, 노동조합에서는 그동안 회사측 지정병원의 검진이 형식적이라며 노동자 3,210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노동조합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직접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생산직 노동자 3,210명 중 27.3%인 876명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직업병 유소견자로 밝혀졌다.⁴⁾ 이는 대기업 노동자 또한 27% 정도의

2) 『동아일보』 1991년 12월 3일자

3) 『한겨레신문』 1991년 5월 15일자

4) 『한겨레신문』 1991년 8월 16일자

높은 비율로 직업성 질환에 걸려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며, 노동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사용자에게 맡기지 않고 노동자 스스로 찾으려 할 때만이 건강진단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음을 보여준 예이다.

크롬중독 1991년 3월 20일 울산지방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아연, 카드뮴 등 비철금속 제조업체인 고려아연에서 근무하던 김천일(45세, 남)씨가 콧속 물렁뼈에 5밀리미터 가량의 구멍이 뚫린 '비중격천공' 환자로 밝혀졌다고 한다.

김씨는 1983년 4월부터 이 회사에 입사해 아연조액부에서 용접 일을 해 왔는데 1989년부터 코가 따갑고 콧물과 코피가 자주 나며, 호흡이 곤란하여 온 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빠지는 무기력증세를 보여 검진을 받은 결과 이같이 판정이 난 것이다.

또 부산지역의 특정화학물질 사용업체 근로자 4,430명을 검진한 결과, 15명이 비중격천공, 2명이 납중독으로 밝혀졌는데 이 중 도금업체인 서울백기라는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박준남(50세, 남)씨 등 5명이 크롬중독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또 반월공단 내 근로자들 중 1991년 1/4분기에만 증금속으로 코뼈가 뚫린 환자가 11명 발생하기도 하였다.⁵⁾

납중독·카드뮴중독 1989년에 비해 3배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된 납중독은 대기업들이 유해물질 관련 공정을 영세 사업장에 하청을 주는 형태가 많아지면서 특히 영세업체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1991년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부산지역의 특정화학물질 사용업체 노동자 4,430명 중 3명이 납중독 증세를 보였고 대구지역의 삼성제련 소속 노동자 18명 중 6명이 납중독 유소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카드뮴 취급업체 20개 사업장의 노동자 190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9명이 정상치를 초과한 카

5) 『동아일보』 1991년 9월 16일자

드뮴중독 증세로 나타났고, 41%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작업장 내 카드뮴 농도를 초과해 직업병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부터 카드뮴중독 증세를 보이던 현대정밀 노동자 2명을 정밀조사한 결과 정상치보다 2배 가량 높은 사실이 공식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카드뮴중독 판정을 유보하고, 고려아연에서 근무하였던 정성운씨도 카드뮴 농도가 정상인보다 높게 나왔으나 직업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TDI⁶⁾에 의한 직업성 천식 래커, 페인트를 많이 사용하는 악기, 가구 목재 가공업체에서 직업성 천식환자가 발생하였는데 1991년 9월 10일 인천에 있는 이정자(51세, 여)씨가 지난 5월달에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TDI에 의한 직업성 천식환자로 밝혀졌다. 이씨는 1987년부터 1989년까지 2년 동안 불상 제단을 만드는 목재가공업체의 도장반에서 래커와 페인트를 칠하는 일을 해왔고 1989년 11월 목재회사로 옮겨서 일을 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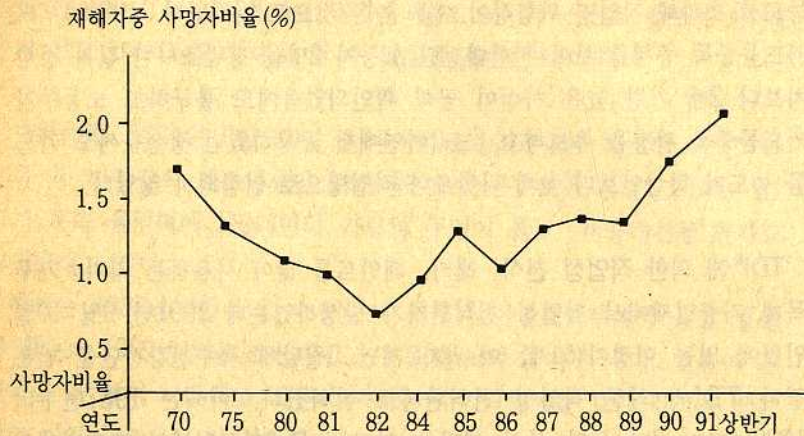
레이디가구의 하청공장에 입사하여 1년 만에 발병한 송하문(48세, 여)씨도 직업성 천식으로 진단이 나왔는데, 이 직업성 천식은 주로 악기, 가구회사에서 많이 발견된다.

직업성 피부염 1990년도에 현대자동차 정비업체에 근무하던 노동자가 걸린 피부염이 직업병으로 인정되어 직업성 피부염의 지평이 열린 이후로 경인지역 5개 자동차 정비업체에 근무하고 있던 노동자 443명을 대상으로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16명이 직업성 피부염 환자로 밝혀졌고 51%인 213명이 손 부위에 접촉성 피부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외에도 운전사의 20%가 LPG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1990년 12월부터 4개월 동안 무주리조트 주차장에서 아무런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근무해온 김찬용(32세, 남)씨는 오랫동안 이 스키장에서

6) 블루엔 2, 4, 디이소시네이트, 침대의 매트리스, 쿠션, 의자, 타이어, 신발창, 도료, 합성 피혁 등에 많이 사용되는 물질

〈표 6〉 연도별 사망재해 현황



주: 1988년 이후 사망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자료: 노동과 건강연구회, 『산업재해 변화양상과 중대재해』, 18쪽

일하면서 강렬한 자외선에 노출되어 피부, 머리털, 눈썹이 하얗게 변하면서 짓물러오는 백납증에 걸려 직업병 판정을 받았다.

2) 1991년 산업재해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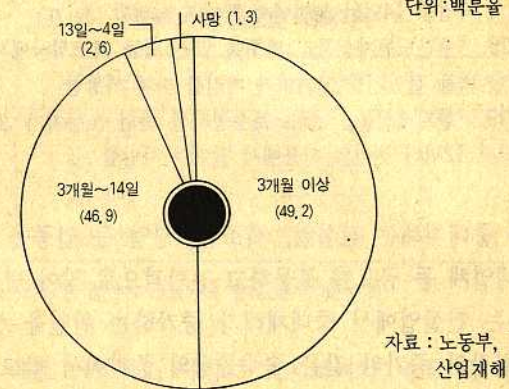
(1) 중대재해의 증가⁷⁾

1990년에도 중대재해가 늘고 있음이 특징으로 나타났으나 1991년에도 여전히 중대재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6 참조). 1990년 산업재해를 분석한 노동부 집계에 의하면 총 13만 2,893명의 재해자 중에서 3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중상자는 6만 5,336명으로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전체 재해자의 50.5%를 차지하고 있다(표 7 참조).

이러한 통계를 1990년 상반기와 대비해 보면 사망자는 전년도에 비해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중대 재해의 의미는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경우,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표 7〉 재해정도별 구성비



자료: 노동부, 1990년 산업재해 분석.

〈표 8〉 1990년 대비 재해자수 비교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전체재해자수	사망자수	신체장애자수	
1990년 상반기	7,318,224	65,122	1,025	13,486	0.89
1991년 상반기	7,490,301	62,324	1,045	14,973	0.83
증감 (%)	2.35 증	4.30 감	1.95 증	11.03 증	0.06 감

자료: 노동부, 1991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

2% 증가하였고 특히 신체장애자는 11%나 증가한 1만 4,973명으로 하루 평균(상반기 근로일을 150일로 보면) 99명의 신체 장애자를 양산하고 있는 셈이다(표 8 참조).

1991년에 보도되었던 사망재해는 다음과 같다.

- 5. 10 『동아일보』, 서울의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자재운반용 승강기가 추락하면서 이 안에 타고 있던 인부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 입음
- 5. 31 『한겨레신문』, 인천 도금업체에서 저장탱크 안의 세척기를 청소하던 노동자 4명이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숨지고 4명이 중상을 입음
- 3. 8 『한겨레신문』, 3월 4일 대우조선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이 회사 노동자 박

주옥씨가 작업대가 밀려나가면서 4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고 6일 고금천씨가 발판 설치 작업중 14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함

11. 29 『주간노동자신문』, 파주에 있는 벽돌 제조회사에서 근무하던 한상천씨는 고장난 벽돌 절단기를 고치다가 머리를 다쳐 사망함

5. 19 『한겨레신문』, 창고 보수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이 무너지면서 12미터 높이의 지붕에서 떨어져 사망함

이러한 중대재해는 건설업, 제조업, 광업 등 업종을 불문하고, 대기업 또는 영세업체 등 규모를 불문하고 전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추세이다.

노동부는 건설업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는 원인을 신도시개발과 지하철 공사현장의 증가와 같은 수주물량의 증가에서 찾고 있고, 이러한 물량의 증가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고령자와 미숙련 기능공을 대거 투입하게 된 것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근본원인은 이윤만을 추구한 나머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거나 안전시설, 안전교육을 무시한 채로 공사를 지속하고 있는 오늘날의 경영 현실에 있다. 1991년 상반기 동안 344명의 사망자를 낸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추락 167명, 감전 31명 등 안전사고 미비가 그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포항의 어느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공사 하청업체의 안전시설 요구를 묵살해 오다 8월 4일 인부 1명이 안전사고로 숨진 경우 등과 같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재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제조업에서도 이러한 원인들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인천 소재 27명 규모의 도금업체인 세진산업에서는 1991년 5월 30일 화공약품 저장탱크 안에 있던 세척기를 청소하다가 노동자 4명이 잇따라 질식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는 세척기를 청소하려고 탱크 내부에 들어가 세척액 두 대야를 퍼낸 뒤 이 세척액에서 발생한 가스에 질식되어 사망한 경우로, 세진산업 노동자들은 이 세척액이 TCE⁸⁾인 줄 모르

8) 도금작업 후 찌꺼기로 분해해서 세척작용을 하는 유기용제의 하나. 이 증기를 마시거나 피부를 통해 인체에 들어가 술에 취한 듯 멍해지고 기억력 감퇴, 시력 저하, 손가락 마비가 오며, 심할 경우 정신착란,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된다.

〈표 9〉 광업에서의 연도별 재해자수

연도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1989년	77,162	8,796 (311)	11.40%
1990년	87,416	7,684 (390)	8.79%
1990년 상반기	90,508	4,173 (210)	4.61%
1991년 상반기	59,528	3,352 (198)	5.63%

자료 : 노동부, 1990년, 1991년 상반기 산업재해 통계 분석 및 대책

고 있었으며 사고 바로 전날에도 사망자 최용석씨가 세척기를 청소하다가 쓰러져 작업이 중단되었으나 별 조치없이 지나갔으며 이전에도 몇 번의 질식사사고가 있었으나 찬물을 뿌리고 끝낼 정도로 안전교육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사고를 방지할 예방조치들을 하지 않았다. 보호구 또한 방독마스크 1개가 비치되어 있었으나 아껴 쓰라는 지시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으며 사고 당일에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먼 마스크만을 썼다는 것이다.

(2) 광업에서의 재해 증가

1989년부터 광업에서의 산업재해 비율을 보면 재해자수는 8,796명 → 7,684명 → 6,704명(예상)으로 다소 감소 하고, 사망자는 311명 → 390명 → 396명(예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1991년의 재해율이 1990년에 비해 높아진 것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인데 이는 광산 근로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재해자수가 나와 재해율이 높아진 것이다(표 9 참조). 이러한 통계는 1991년 9월까지의 산업재해를 분석한 통계에서도 다른 업종에 비해 7배나 높은 산업재해 발생률과, 23배나 높은 산업재해 사망률에서도 나타났다.⁹⁾ 이러한 높은 산업재해율은 광산업이 사양화함에 따라 사용자의 안전시설 투자가 전무하고, 많은 광

9) 『동아일보』 1991년 12월 3일자

원들이 탄광을 떠나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는 사용자들이 무리한 작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발표하였다. 노동부의 발표와 같이 문을 닫겠다고 신청하는 업체가 늘고 있고 탄광을 떠나는 광원들이 늘고 있어 남아 있는 광원들의 산업재해, 직업병문제는 더욱 증대할 전망이다.

이러한 광산업 문제에 대해 열악한 근로조건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을 위한 정책없이 정부는 '해외에서의 광원 인력 수입'¹⁰⁾ 등의 정책들을 내놓아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1991년에 구체적으로 발생한 산재사고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낙반이나 붕락사고 정선군 소재 상진기업에서 최봉준씨가 1991년 3월 29일 막장 안에서 천공작업을 하던 중 굴의 천장에서 경석이 머리 위로 떨어져 머리, 허리 등이 다치게 되었으나 회사와 노동부에서는 경석이 허리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허리 부분의 산재는 인정하지 않았음. 삼척탄좌에서 근무하던 신완옥씨가 1991년 6월 24일 막장보수작업을 하다가 붕락으로 부상하는 사고 발생

가스사고 삼척탄좌 하청업체인 신하기업에서 근무하던 권두길씨가 1991년 6월 13일 갱도에서 가스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동료들에게 구출되어 현기증, 두통 등의 증세와 추간판 4, 5번 탈출증(허리 부분의 질병)으로 입원 치료 중이나 허리 부분의 질병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재심사 청구중에 있음

운반재해 태백시 소재 장성광업소에서 일하던 김주현씨는 1991년 2월 28일 막장 안에서 광차를 타고 있다가 탈선으로 탄차가 무너지는 사고를 당하여 다리, 허리 부분을 다쳤으나 허리 부분의 병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 부분만 산재로 인정하여 치료중

1991년 5월 30일 진재덕씨도 막장 안에서 전차를 운전하던 중 머리를 천장에 부딪친 후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를 당함

화약·화재·실족 등 삼척군 소재 경동탄광에서 근무하던 김종영씨가 1991년 2월 22일 갱 안에서 아이빔 작업중, 넘어진 아이빔에 깔려 뇌진탕으로 입원했으나 부분적으로만 산재가 인정 됨

사북 소재 동원탄좌에서 일하던 전석호씨도 1991년 3월 11일 배선작업중 전기

10) 『한겨레신문』 1991년 2월 27일자. 최병렬 노동부장관이 태백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외 광원 수입에 대한 적극 검토와 실시 의사를 밝혀 1991년 “노동자, 힘든 일하기 싫어한다”는 논리와 함께 해외 노동인력 수입 등으로 노동계와 논란을 벌였던 내용이다.

감전으로 화상과 왼쪽의 부분적 신경마비.¹¹⁾

1989년 9월 2일의 갱내 화재사고로 유독가스에 중독되어 인천 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37명의 동원탄좌 노동자 중 이재덕씨 등 7명이 환자 전원에게 노동력 상실률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1991년 4월 26, 27일, 양일간에 걸쳐 갱 입구를 막고 농성을 했고 5월 6일 비닐 천막을 쳐놓고 밤샘 농성을 벌임.¹²⁾

이러한 빈발하는 산재사고와 그에 따른 노동부의 산재 인정, 불인정 시비 등이 광원들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고통이며 진폐 판정의 문제점, 진폐환자를 위한 병원 입원제도의 문제가 속발하는 등 탄광지대는 우리 사회 산업재해의 가장 큰 그늘지대이다.

(3) 영세하청 노동자의 재해 위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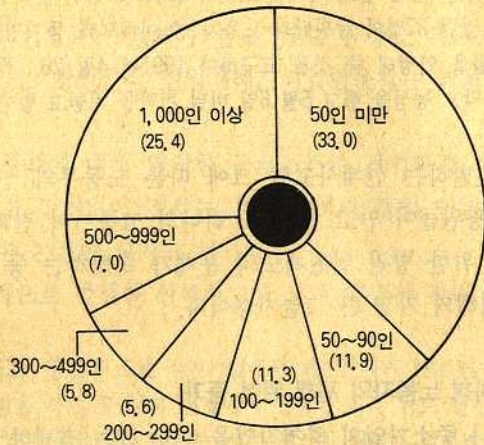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하청작업을 주로 하는 영세한 규모(여기서는 50인 이하의 규모로 규정하기로 한다)의 경우는 이미 알려진 바대로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량한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산업재해의 온상이라 할 수 있다. 노동부의 통계에서도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전체 재해의 61.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3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표 10 참조). 대부분의 재해의 원인이 열악한 근로조건과 작업환경, 안전교육의 부재 등으로 인한 재해로, 이러한 재해는 1991년에도 여전히 발생하였는데, 앞의 세진산업뿐만 아니라 인천 소재 전진상사라고 하는 부품회사에서도 산재사고가 있었다.

1991년 10월 19일, 17명 규모의 조립회사에서 근무하던 홍영숙(여, 36세)씨가 잔업수당 2천원을 더 벌겠다고 토요일 오후에 남아서 잔업을 하던 중 납땜작업을 하는 예열기가 과열되어 전기스파크가 나면서 작업복에 순식간에 불이 옮겨붙어 온 몸에 화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홍씨가 일하던 작업장은 다른 공정과 달리 밀실과 같은 구조에다 두 사람이 들어가기에도 비좁은 공간에 알콜, 100%의 시너, 납 증기 등의 유해물질이 널려 있었다. 그러기에 이 유해물질에 절다시피한 작업복을 입은 채

11) 카톨릭광산노동문제상담소 상담자료

12) 카톨릭광산노동문제상담소, 『광산의 소리』 제3호

〈표 10〉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비율



자료 : 노동부, 1990년 산업재해 분석 단위:백분율

로 뜨거운 예열기 앞에 앉아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고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¹³⁾

그날 잔업만 하지 않았더라도, 기계가 고장만 나지 않았더라도, 유해 요인이 제거된 작업장만 되었더라도 당연히 막을 수 있었던 이 산재는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단면을 보여준 예이다. 이 전진상사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5인 이상 사업장은 당연히 가입하게 되어 있는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홍씨의 가족들이 초기에 산재 인정 여부를 두고 애를 태우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회사가 영세 사업장에 강제로 적용되는 산재보험에 들어 있지 않아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는 산재 후에도 난감한 고통에 처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바이다(옆면의 가족 호소문 참조).

13) 『주간 새건강 신문』 제42호

노태우 대통령과 최병렬 노동부장관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저는 인천직할시 북구 작전동에 살고 있는 한 여자의 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인 조정선(趙正善)입니다.

아내와 함께 공장일을 하면서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 가던 어느 날 뜻밖에도 커다란 불행 앞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월 19일(토) 오후 2시 15분경, 인천시 효성동 소재 전진상사(前進商社, 대표:유몽로)에서 2천 원을 더 벌겠다고 잔업을 하고 있던 아내 홍영숙이 작업환경 불량으로 전기스파크가 일어나 화재가 발생, 전신 100% 3도 화상이라는 회복 불능의 중상을 입은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날 밤 영등포에 있는 한강성심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아내 홍영숙은 48시간 이내에 100% 사망이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온 가족이 환자 옆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던 바, 다행히도 48시간 이내에 사망한다는 아내는 6일째 되는 오늘까지 살아 있는 기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무성(無聲)한 사고처리 태도로 인해 슬픔과 절망이 분노로 바뀌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1. 사고 근로자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6일이 지나도록 회사 대표는 얼굴도 한 번 내밀지 않고 있으며,
 2. 아직까지 치료비는 물론 산업재해보험 혜택 여부마저 불투명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3. 경찰에서는 의사의 사체검안서를 접수받아야만 검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환자의 임종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리하여 나는 대한민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해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노태우 대통령과 최병렬 노동부장관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1. 인간의 생명은 법과 제도 이전에 존중되어야 하며 보호되어야 한다.
2. 짓밟힌 산업재해 근로자의 권리는 회복되어야 한다.
3. 이러한 일은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하며 제2의 홍영숙이 나오지 않도록 작업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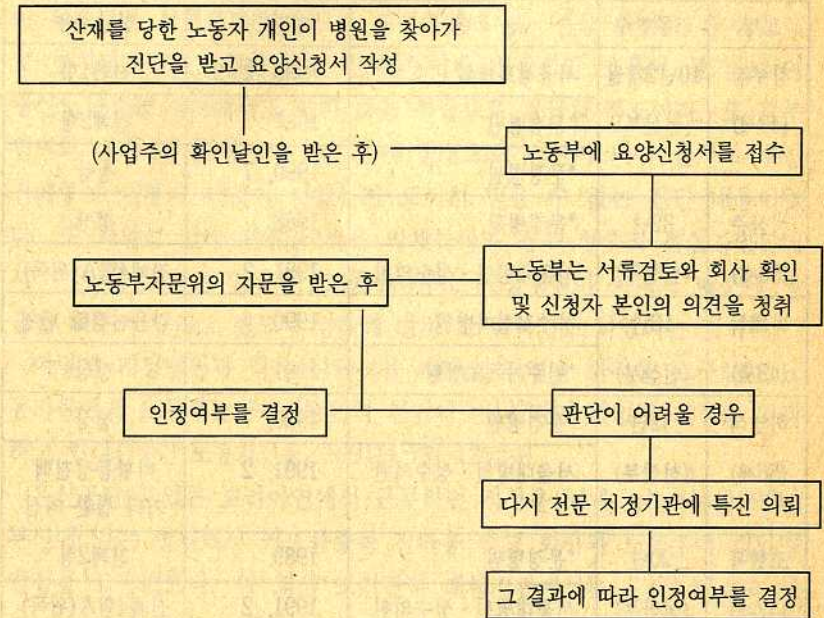
이러한 영세 사업장의 전통적인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대기업 내의 유해 부서나 유해물질 취급 공정을 하청공장의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일이 늘고 있어 앞으로도 영세한 규모의 공장에 고용되어 있는 하청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위험성은 줄어들기 힘든 형편이다. 자동차회사의 경우 도장

반과 주물반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도장부들은 이미 하청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기아자동차의 주물반 경우 한 현장 안에 기아노동자와 다른 회사의 노동자가 같이 근무하고 있다. 주물 공정은 용광로에서 용해→용탕의 주입→탈사 등의 후처리→도장·검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주형을 벗기기 위한 탈사작업의 경우 모래, 첨가물 등의 분진이 아주 심한 작업으로 여러 단계의 탈사작업 등이 하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체된 주물사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다시 쓸어모으는 작업도 하청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다. 대우자동차에서는 주물을 만들어내는 270명 규모의 인천 주물공장을 1991년 6월 아예 폐쇄해 버리고 다른 하청 회사에 맡기는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노후한 시설 개선과 작업환경 개선 등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하청으로 맡기는 것이 소위 경영합리화(?)를 위해 유리하다는 경영전략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2. 직업병 인정을 둘러싼 제도적 폐해와 사용자의 부당 탄압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진 때 “이상 있음” 등의 진단이 나오면 이미 자신의 건강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이는 검진 자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가 검진항목도 아주 기초적인 몇 개 항목에 불과해 그 기초적인 조사에서조차 이상이 있다고 나타난다면 이는 이미 중증의 단계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인 검진이나 노동자 자신이 몸에 이상을 느껴 의사의 검진을 통해 직업병이라는 진단이 나와도 노동부로부터 직업병으로 인정을 받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7천에서 8천 명 정도의 직업병 환자가 발생하나 노동부로부터 직업병으로 인정되어 모든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는 20%인 1,500명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다. 1991년에는 이러한 직업병 인정 과정에서의 두터운 장벽들로 인해 사망하였던 김봉환씨의 산업재해 문제가 사회여론화되었던 해로 산업재해 인정(특히 직업병을 중심으로)을 둘러싼 제도적인 폐해들을 정리해 보았다.

〈표 11〉 직업병 인정 절차



러싼 제도적인 폐해들을 정리해 보았다.

1) 검진기관제도에서 오는 폐해

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노동부가 지정하는 곳에서 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이 지정병원들의 신뢰도와 공정성 등이 문제가 되어 왔다. 1991년에는 문경지역의 광산노동자들에 의해서 특히 이 문제가 크게 드러나 해였다.

1991년 2월, 문경지역의 광산노동자 225명은 노동부 지정병원인 문경병원의 진단결과를 불신하여 집단으로 상경하여 '인도주의 실천을 위한

〈표 12〉 노동부 지정병원과 타병원 진단검사 비교표

성명	근무연수	진 단	진단일시	진단내용
강부점 (43세)	10년2개월 (선산부)	서울성모병원	1986. 2. 9	진폐1형
		*문경병원	1987.	진폐2형
		*문경병원	1990. 7	정상
이삼준 (56세)	32년 (선산부)	*문경병원	1988.	정상
		서울대병원·성수의원	1991. 2	진폐4형A(위독)
박재득 (49세)	16년 (선산부)	상주적십자병원	1990.	감음신경성 난청
		*원주기독교병원	1991.	정상
허영식 (56세)	32년 (선산부)	*문경병원	1990. 7	정상
		서울대병원·성수의원	1991. 2	비활동성결핵 기타 질환 의심
조현복 (42세)	20년 (선산부)	*문경병원	1989.	진폐2형
		서울대병원·성수의원	1991. 2	진폐4형A(위독)
박병구 (53세)	15년 (선산부)	*문경병원	1989.	정상
		서울대병원·성수의원	1991. 2	진폐2형 (폐기능장애)
김정성 (58세)	25년 (선산부)	*문경병원	1983.	진폐1형(11급)
		서울대병원·성수의원	1991. 2	진폐4형(위독) 폐기종, 간질환 의심

주: *는 노동부 지정병원

자료: 『주간노동자신문』 1991년 7월 12일자

의사협의회' 소속의 서울대학병원과 성수의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이 결과 225명 중 137명이 진폐소견으로 나타나 지정병원에서 내린 '정상' 소견과는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표 12〉의 이삼준씨는 노동부 지정병원에서 정상이라고 나왔으나 서울에서 진단한 결과는 진폐4형의 위독한 상태인데다 폐기종까지 겹쳐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로 나타났으나 지정병원에서는 정상 판정을 하여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형편이다. 진폐4형이란 정상적인 호흡이 불가능하여 광산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이미 죽을 사람으로 취급될 정도이다. 또 강부점씨의 경우 진폐2형에서 3년 만에 정상으로 진단이 나와 불치의 병인 진폐증이 어떻게 깨끗이 나았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진단 내용이었다. 또 직업성 난청 판정을 받은 박재득씨의 경우 상주의 적십자병원에서 "진단서 발급은 안된다. 노동부사무소 지정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발급을 해주지 말라고 했으니 양해해 달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지정병원과 다른 진단서를 가지고 직업병 판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노동부는 "지정병원의 진단이 아니"라며 직업병 판정을 기피하고 있다(『주간노동자신문』 1991년 7월 12일자).

온산공단에 있는 고려아연에서 근무하던 정성운(34세, 남)씨는 1990년 부산에 있는 병원에서 카드뮴중독 진단을 받고 회사와 노동부에 직업병 인정을 요구했으나, 이 회사 보건관리 대행기관에서는 '정상'이라고 하고 다른 병원에서는 '중독'이라고 하는 등 진단이 엇갈리게 나오자 노동부가 자의적으로 정상 판정만을 받아들여 직업병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결국 국내 병원에서 소신있게 진단서를 작성해 주지 못하자 정씨는 1991년 4월에 미국으로 건너가 미 국립 보건검사실에 의뢰한 결과 정상인보다 무려 5배가 넘는 카드뮴이 검출되어 카드뮴중독 진단을 받았다. 이 진단서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외국기관의 판단이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며 직업병 인정을 거부하였다.

이와 같이 병원마다 진단 내용에 차이가 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전문적인 의료장비가 부족하고 직업 관련성 진단에 대한 의사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점 때문이며 의사들이 진단서를 소신있게 작성하지 못하는 현실에도 기인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전문적 장비와 숙련된 의사를 갖춘 병원을 지정함으로써 직업병 판정의 참고와 조언으로 삼고자 했던 지정병원제도가 "지정병원 이외의 진단 결과는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는 구실로 직업병 판정을 기피하고 지연시키는 악덕제도로 굳어져 가는 데 있다.

탄광지역 노동자들은, 노동부가 광업소를 방문할 때마다 직업병 판정을 고의로 지연, 묵살해 주는 대가로 엄청난 촌지를 챙겼고, 병원측은 직업병 판정이 되는 진료를 도맡아하는 대가로 탄광에서 생기는 안전사고에 대해 광업소측에 유리하게 처리하는 등 3자 간의 거래와 담합이 광산노동자를 진폐라는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회사·노동부·병원의 담합관계로부터 오는 피해는 산업재해를 당하게 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 겪는 것이다.

2) 직업병 인정기준의 경직된 해석으로 인한 피해

1991년 11월 개정되기 전의 법에서는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크롬, 카드뮴 등은 혈중, 뇨중 농도 등 그 기준치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운용되는 과정 속에서 또는 노동부가 내리는 해석에서 판정기준이 법에 나와 있는 수치를 만족시켜야 한다거나, 아직 법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라는 등의 이유로 업무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원진레이온의 김봉환씨의 경우는 그 사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6인의 판정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여기서 내린 결론은 "고인이 근무했던 작업장 내의 이황화탄소 농도에 관한 자료, 근무 당시의 검진자료, 신조직의 전자현미경적 소견, 안저혈관 촬영, 근전도 등에 관한 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본위원회가 고인의 이황화탄소중독 여부에 대한 일치된 합의를 할 수 없었다"라고 내려졌다. 이를 두고 회사측은 직업병이 아니라고 발표하였고, 원진레이온의 싸움이 다 끝난 1991년 말에도 유족보상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볼 때 노동부 역시 이를 근거로 김봉환씨의 사인을 직업병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김씨의 경우는 사망 후 시일이 경과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

여 직업병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김씨가 원진레이온에서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었던 사실이 명백하고, 그 부서에도 비슷한 증세의 중독환자가 고혈압, 발음장애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병리검사에서도 몇 가지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직업력과 역학적인 측면에서 적합성이 충분함에도 단순히 의학적인 병리적 검사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직업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직업병을 단순히 의학적인 측면에만 의존하여 해석하는 잘못된 태도인 것이다.

서울에 있는 아남산업에서 14년 동안 근무해 온 정용택씨는 과장으로 승진하였으나 1987년 회사에서 행한 정기검진에서 고혈압으로 재진단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회사측은 이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해 주지 않은 채 특별한 이유없이 보직을 박탈하고 경기도로 전출시켰다. 장거리 출퇴근으로 쌓인 과로와 지나치게 많은 업무로 건강이 악화되었는데 이후 1988년 9월에 다시 본사 근무를 했다(이어 1989년 10월에 다시 보직 박탈). 1990년 4월부터 보직이 없음을 이유로 퇴직을 강요당하다 5월에 고혈압으로 쓰러지게 되어 대기발령 상태에서 1990년 7월에 결국 해고되었다. 건강한 신체로 입사하여 14년이 지나 고혈압이라는 병을 얻어 쓰러졌으나 노동부에서는 ".....이후의 과다한 업무로 인한 고혈압의 악화는 인정되나 재해 장소가 사업주 지배를 벗어나 있어 업무와 관련된 재해로 판단하기 힘들다"라고 하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업무로 인해 질병이 생긴 것은 인정하지만 단지 쓰러진 장소가 현장이 아니고 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로, 노동부의 경직된 해석의 일면을 보여준 예이다.

영업용 LPG 택시를 운전하던 강균대씨는 차령이 다 지나 폐차할 날만을 기다릴 정도의 노후한 차량을 몰다가 '고혈압성 심근증, LP가스 중독 추정'으로 1989년에 쓰러졌다. 노동부에 세 차례에 달하는 산업재해(직업병) 인정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번번이 기각되었는데, 그 이유는 "사업장에서 만성중독의 사례가 없으므로 강씨의 증세는 LPG와 직접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택시 기사들도 같은 중독 증세를 느끼고 있고¹⁴⁾ 특히 강씨의 택시는 너무나 낡아 아무도 타려고 하지 않던

차였다. 노동부의 기각 결정에도 굴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강씨는 끝내 1991년 12월 산업재해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3) 직업병 판정 지연에 의한 피해

회사의 정기 검진에서 '이상 있음'으로 나타나도 직업병 판정이 나기까지 1년이 넘는 기간이 걸려, 그동안 아무런 치료나 작업 전환 등의 조치가 없어 병이 더 깊어가게 되는 현실은 직업병 피해자들이 받는 또 하나의 고통이다.

원진레이온의 김장수씨는 방사과에서 10년 동안 일하다 1989년 9월 '이황화탄소 중독의증 및 간질환' 통보를 받았으나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했고, 이후 1990년 6월의 정기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몸에 나타나는 증세는 점점 심해져 젓가락질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고 다리에 마비가 와서 회사측에 산재요양 신청을 내었으나 정상 판정이 나왔으며 계속 미루어오다가 김봉환씨의 사건으로 원진레이온 문제가 사회화되면서 1991년 7월에야 비로소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모든 보상 등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앞 장에서 살펴본 정성운씨의 경우도 1년이 넘게 직업병 인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4) 사용자의 부당한 횡포로 인한 피해

(1) 사용자의 날인 거부

앞의 표에서와 같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 재해자가 노동부에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노동부가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 그에 따른 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재해자는 그 소속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사용주의 확인 날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회사

14) 전국 택시노련 인천지부 운전기사 8천여 명 중 1천 6백여 명의 기사들이 LP가스 때문에 두통, 식욕부진, 눈충혈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겨레신문』 1991년 10월 8일자).



▲ 원진레이온 직업병 노동자 고 김봉환씨 유가족

측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재해자는 또 한 번의 고통을 겪게 된다.

원진레이온 김봉환씨의 경우는 '이황화탄소 중독의증 및 고혈압'이라는 진단서와 함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사자가 일한 부서가 유해 부서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회사측이 확인 날인을 거부하였고, 노동부 또한 이를 핑계로 접수를 거절하여 노동부와 회사측을 왔다갔다하면서 애를 태우다 사망하게 된 사례이다. 당시 신청서를 받아들였다면 정확한 검진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따라서 사망에 이르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일했던 손성순씨의 경우도 회사측에서 날인을 해주지 않아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한 사례인데(진정서 참조) 회사측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것은 단순한 확인절차를 하지 않는 부당한 횡포이며 이를 이유로 접수받지 않는 노동부 또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구로공단에 있는 컴퓨터 키보드를 생산하는 업체에서 기능검사를 맡았던 한 여성노동자도 1991년 9월에 경견완장해 진단을 받고 산업재해 처

〈표 13〉 손성순씨가 회사측의 날인거부에 대해 진정한 내용

진 정 서

1999. 7. 14

손성순
131021 - 1337218

상기 받은 서류의 내용이 아니라 탁발 공장장에서
중사라 했습니다. 1999년 6월 1일부터 풍림의
달 동부 건물에서 6월 11일까지 일을 하고
숨겨진 물이 아프기에 집에 와 생리 병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전폐 이성이란
전폐이 나왔기에 정밀 진단을 받으려고 풍림
노동부 산업안전과에서 상담을 6월 19일 해서
6월 22일 보상으로 보내기에 보상과에서 퇴직금
결정 관련 상담을 받아오라고 하기에 관련 상담을
받으려고 하니 못해 주겠다고 해서 돌아와서
풍림 노동부 보상과에서 관련 상담을 안해주면
못해 주겠다고 이걸 정관년께 올리노 바랍니다
정관년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속한
개월 내로 정밀 진단을 받게 해 주셨으면 하는

선 결	과 명	도 명	부 명	시 명	구 명	읍 명	리 명
1999. 7. 14	12지	4116					
처리부	재해보상과						

진정인 : 손성순

(노동부, 국정감사제출자료 중에서)

리를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은 날인을 거부하며 회사 자체 내의 공상¹⁵⁾으로

15) 현장에서 흔히 통용되고 있는 말로 회사 안에서 일어난 사고 등을 회사 내에서 알아서 처리하면서 회사가 치료비, 임원비 등을 지불하는 것.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것과는 다르나 흔히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처리하였다. 편법처리인 이러한 공상 처리는 아주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무재해 표창을 받은 안산 서해공업에서도 산업재해가 167건이나 발생했으나 9건만 재해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공상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확인 날인 거부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노동부에서는 확인 날인을 거부하는 사업주를 처벌하겠다고 개선대책을 밝히기도 하였다(『동아일보』 1991년 6월 15일자).

(2) 해고·사직 종용 등

1990년 납중독으로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정태문씨 사건이 여론화되자 사망하기도 전에 장례대책을 세워 공문으로 지시하는 모습을 보였던 한 국통신은, 1991년에도 또 다시 반노동자적인 작태를 드러내었다. 1991년 특수검진 결과 직업성 난청에 걸린 노동자들이 발생하였는데 이들 중 근무경력 18년이 된 전람원 박현수(41세, 남)씨에게 “건강진단 결과 소음성 난청으로 판정을 받더라도 보직 변경을 원하지 않겠으며 계속 전람현장 유지 보수를 하다 난청이 악화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하였다.

1990년 5월에 입사하여 포항의 생산현장에서 일하던 임명근씨는 현장의 심한 소음으로 인해 일년도 채 못되어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조금 지나면 귀찮아진다는 반장의 말을 듣고 담배필터로 귀를 막아가며 일을 해오던 중, 1991년 1월 ‘감각 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1개월 정도는 2교대 근무에 잔업근무에서 제외해 주더니 생산에 차질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2교대 근무를 하게 하여 주당 평균 100시간씩 일을 하였다. 점점 증상이 심해져 3월 다시 진단을 받은 결과, 원인을 알 수 없는 ‘혼합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회사측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니 직업병은 말도 안된다고 하며 병원에 다녀온 다음날부터 더 힘든 부서로 배치하고는 관리자들을 시켜 감시하게 하는 등 압박이 심하여 결국은 사직서를 쓰고 나오게 되었다(부록의 진정서 참조).

원진레이온에서 일하던 이종길씨는 3~4년 전부터 자주 팔다리가 마비되고 심한 두통에 시달리다 1990년 12월 건강진단에서 이황화탄소중독

증세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측은 보름 동안 입원시킨 뒤 그대로 다시 근무하게 하여 1991년 4월에 쓰러졌다. 또 16년 간 일해온 박수일씨도 1989년에 “이황화탄소중독 증세가 있으므로 작업장 전환과 추가검진이 필요하다”는 병원측 통보가 있었음에도 작업장을 옮겨주지 않아 계속 근무하다가 1991년 4월에 쓰러졌다. 김장수씨의 경우는 다리에 마비가 오는 등 증세가 심해져 요양신청을 요구하자 노골적으로 “사표를 쓰면 검토해 보겠다.”며 신청서 발급을 회사측이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이상의 예들은 10년씩 된 장기 근속자들을 “젊고 필요할 때는 쓰고, 늙고 병들면 폐품처럼 버리는” 경영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5) 기타

대구에 있는 삼성제련 소속 근로자 18명 중 6명이 납중독 유소견자로 진단이 나왔음에도 회사측은 본인들에게 이 사실을 숨긴 채 계속 ‘데칼론’이라는 알약을 영양제로 속여 매일 한 알씩 준 예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데칼론은 납중독이 심한 사람에게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주는 약으로 알려져 있다. 앞에서 살펴본 정용택씨의 경우도 회사측이 검진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았고 13년 간의 장기 근속자인 원진레이온의 송태권씨도 두 차례에 걸쳐 소음성 난청으로 판정을 받았으나 회사측은 이를 무시하고 본인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일을 시키는 등 건강진단 결과를 은폐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3. 산업재해 추방운동에 대한 탄압

1990년까지는 직업병 예방이나 사고성 재해 등에 관한 투쟁이 개인적인 싸움이나 노동조합에서의 대책활동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1991년

에는 산업재해가 계기가 되어 노동자들의 대중투쟁이 고양되었고 노동조합이 산업재해문제를 계기로 투쟁을 하기도 했으며, 특히 시신을 놓고 싸우며 이루어낸 김봉환씨 직업병 인정 투쟁의 값진 승리로 직업병 제도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어내기도 한 해였다.

1) 삼성전관 노동자들의 대중투쟁

1991년 4월 10일 컬러텔레비전 화면조정 작업을 하던 김병무씨가 “머리가 어지럽다”며 쓰러진 후 곧 사망하였다.

김씨는 1987년에 삼성전관에 입사하여 줄곧 이 작업을 해왔으며, 1987년에도 같은 작업실에서 일하던 동료 노동자가 비슷한 증세로 숨진 적이 있고 1990년에도 숨진 사람이 있었기에 전자파에 의한 직업병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과거에 동료들이 숨졌을 때도 호지부지 넘어간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관 노동자들은 병원 앞에서 사인규명을 요구하며 침묵시위를 하였고,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 이어져 다른 부서의 노동자들까지도 가세하여 “김병무씨 사인 규명, 작업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1천여 명의 농성대열로 늘어나게 되었다. 이 농성과정에서 각자의 요구사항을 작성케 하여 200여 가지의 요구사항이 나왔는데 대표를 선출하고 48가지로 요구안을 줄여(작업환경 개선 관련, 잔업 등 근로조건 관련, 회사측의 강압적이고 비인간적인 노무관리의 시정과 관련된 내용) 회사와 협상을 하였다. 협상 결과, 특수의료진단 실시, 생산장려수당 신설, 김씨 죽음에 대한 사과문 게재, 부검 결과 공개, 고열 공정 개선, 외출시 관리자 간섭 배제, 강제잔업 철폐 등의 29개 사항을 합의하였다. 물론 예상했던 대로 부검 결과는 심장 내부 혈관 파열로 직업과의 연관성은 밝혀지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은 직업병 판정을 위한 작업환경 측정 등은 하지 않고 단순히 의학적 측면으로만 본 것이므로 의학적인 부검 결과만으로 김병무씨가 작업과 관련없이 사망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삼성전관 노동자들의 싸움은 직업병(산업재해) 문제를 계기로 대중투쟁

이 고양되고 회사측과 합의를 이루어낸 점 등에 그 의의가 있다. 또 관심이 높고 있고 현재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전자파로 인한 장애 등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심증을 갖게 하여 전자파 관련 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게다가 비인간적 상호 감시 체계와 문제자에 대한 회사측의 집중관리, 경찰조직을 방불케 하는 세콤이라는 경비용역회사 등으로 노조없는 회사를 늘 자랑해 온 삼성그룹에서 1천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내건 농성을 한 사건은 삼성 역사에서도 획기적인 일이었다.

물론 이 투쟁 과정에서도 회사측은 조문 간 해고자를 고소하고, 회사에서 애초에 실시하기로 한 장례식 약속을 어기고 휴업조치 등으로 출근하는 노동자들을 정문에서 막는 등 삼성다운 탄압을 가하였다.

2) 원진레이온 직업병 인정 투쟁

(1) 사건의 발단

원진레이온은 1959년에 설립되어 비스코스 인견을 생산해내는 국내 유일의 원사 독점업체이다. 일본에서는 이황화탄소 문제로 폐기처분하려던 기계를 들여옴으로써 이미 20년 전부터 직업병 발생은 예견되었던 문제였으나, 1988년에서야 직업병 문제가 사회여론화되었다. 235명이 직업병에 대한 정밀검진을 요청하였는데, 이 중 129명(1991년 12월 31일 현재)이 직업병으로 판명이 났으며 아직 110여 명이 검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이 중 10명이 직업병으로 사망하였다.

1991년의 사건의 발단은 김봉환씨로부터 시작되었다. 김씨는 이황화탄소중독으로 퇴사하기 전까지 6년 간 이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퇴사 후 경비일을 하면서 자신의 병명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다가 1989년에는 쓰러져 말을 더듬게 되었다. 이때부터 직업병이 아닌가 의심하여 병원을 소개받아 '이황화탄소 중독의증 및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1990년 11월에 받게 되었다. 이 진단서를 가지고 회사에 요양신청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김씨의 부서가 유해 부서가 아니

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노동부에서도 회사측 날인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접수를 거부하여 노동부와 회사를 왔다갔다하면서 애를 태우다 1991년 1월 5일에 사망하였다.

(2) 경과

1991년 1월 5일~3월 30일 사망 직후 원진 피해 노동자들과 고인의 가족, 노동조합, 산업재해 추방운동에 관여해 온 여러 단체가 결합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노동부 항의방문과 사인규명작업에 들어갔다. 이 초기의 싸움에서 회사측은 직업병 판정을 위한 판정위원회의 소집을 지연시키는 등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였는데, 대책위는 시신이 많이 부패하자 가족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일단 장례식을 치르기로 하였다.

3월 31일~4월 23일 31일 회사에서 장례식을 치르려 하였으나 경찰을 동원한 회사측의 방해와 장례식장 난입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면서 가족과 대책위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게 되었다. 매일매일 회사 정문 앞에서 규탄대회가 있었으며 직업병 판정을 위해 열린 판정위원회에서는 "고인이 근무했던 원진레이온 작업장 내의 이황화탄소 농도에 관한 자료, 근무 당시의 검진 자료, 신조직의 전자현미경적 소견, 안저혈관 촬영, 근전도 등에 관한 자료 부재로 인하여 본 위원회가 고인의 이황화탄소중독 여부에 대한 일치된 합의를 할 수 없었다"라고 판정하였다. 이를 두고 회사측은 직업병이 아니라는 판정이 났다고 발표하는 등 기만성을 나타내어 가족 및 노동조합 등의 분노가 극에 달하였고 사회적으로도 대대적으로 여론화되기 시작하였다.

4월 24일~5월 21일 25일 방사과에서 근무하다 산재 처리 지연, 병세 악화에 대한 비판 등으로 자살한 권경룡씨의 죽음이 알려졌다. 이 소식을 접한 방사과 노동자들은 노동부의 작업환경 측정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으니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 등을 요구하며 작업거부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되자 국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였고 5월 3일부터 원진 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하였다. 강경대군의 죽음과 임금인상투쟁 등으로 사회적으로도 노동자 및 제반 민주진영

의 싸움이 연일 계속되었던 5월 정국 속에서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은 “독가스는 먹기 싫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 싸움의 대열에 합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주체적인 투쟁역량의 고조와 대사회적인 여론의 힘에 밀려 회사측은 5월 19일에 직업병을 인정, 이에 합의를 하였다. 이로써 137일 만에 걸쳐 시신과 함께 한 투쟁은, 5월 21일 산업재해 노동자장으로 장례를 치렀고, 직업병에 대한 개연성 및 제반 직업병 관련제도의 획기적인 내용을 이루어냄으로써 끝나게 되었다.

(3) 합의 내용과 의의

김봉환씨 사망사건과 관련한 영역에서 국회 노동위원회의 실태조사위원회의 보고내용을 상호 확인한다고 합의하여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는, 일단 그 개연성을 인정하고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직업병 관련제도 개선과 관련한 영역에서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전문가에 의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현직자 중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의증 소견이 있을 때는 과거처럼 긴 기간 동안 치료도 받지 못하고 검진에서 판정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즉각 요양신청서를 발급하고 검진요양과 더불어 즉시 치료도 실시하도록 하였다.

작업환경 측정 및 점검에 관련된 영역에서 노동조합이 지정하는 곳에서 노동조합이 전문반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실시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고 김봉환씨의 직업병 인정투쟁으로 국내 최초로 직업병의 개연성 인정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작업환경 측정, 건강 검진, 역학조사 등 산업안전 보건활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노동조합의 지정권, 참여권을 보장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전·현직 근로자를 막론하고 직업병 의증진단 단계에서부터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산업재해와 관련해 전반적인 제도에서 큰 진전을 이루어내었다.

(4) 회사측의 탄압

회사측은 김봉환씨가 일했던 부서가 유해 부서가 아니라는 핑계로 요양신청서 발급을 거부하였는데 원액 2과는 김씨가 근무했을 당시, 작업자가 일일이 뚜껑을 열어 놓고 작업하여 이황화탄소에 노출이 되었고, 자동화가 된 뒤에도 이황화탄소 농도가 허용치를 넘는 등 여전히 유해인자에 노출되고 있었다. 또 김씨 이전에도 원액 2과 근무자 중 직업병으로 인정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로 보아 이는 회사측의 단순한 핑계이다.

또 회사측은 직업병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는 데서 더 나아가 이 직업병 인정문제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고자 매일매일 계속된 규탄대회에 참여한 구리 노동상담소장 외 10여 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고소하였고 심지어 원진레이온 직업병 판정 노동자측 의사인 김록호 원장까지 고소하였다. 1988년 원진레이온의 직업병 문제가 사회화된 이후에도 회사측은 직업병 유소건자로 판명된 노동자 5명을 인력 부족을 이유로 타부서로 작업 전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노동자들에게 최고 21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강요하여 월 50시간 초과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법적 의무사항인 안전보건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등 13건의 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4. 1991년에 발표된 각종 정책의 문제점

원진레이온의 직업병 인정 투쟁 이후 정부(노동부)는 직업병 예방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하는 등(1991년 6월 14일 직업병 예방종합대책) 1991년에 산업재해와 관련한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원진레이온의 합의사항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현실에서는 구태의연한 관행을 계속하고 있어 말뿐인 직업병 종합대책임을 드

러내었다. 이는 1991년의 전반적인 노동자 탄압과도 맞물려 있는데 법의 수호자인 정부가 먼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노동 3권을 무시한 채 형법 민법 등에 의한 탄압까지 자행해 왔다. 이러한 탄압 속에서 임금인상 투쟁의 고조와 직업병 문제에 대한 사회여론의 악화로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말로만의 화려한 정책이 바로 직업병 예방대책이었다.

그러나 이 대책은 노동법 개악 움직임, 일 더하기 운동 등 1991년 하반기 정세 속에서 결국 노동자 건강을 위한 정책으로 현실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말뿐인 허울에 그쳤다.

1) 직업병 인정기준의 개악 측면

노동부는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중전의 “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서 “업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로 개정하여 인정기준을 다소 넓혔다. 그러나 이 개정 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 순수한 사적 행위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법조항을 없애 오히려 인정 폭을 좁혀 놓았다. 이는 노동부로부터 불승인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대부분 이 법조항으로 인해 그 동안 승소해 왔던 관행에서 볼 때 산업재해 노동자에게 몹시 불리하게 개정된 것임에 분명하다.¹⁶⁾

이 법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한” 등의 조항으로 넓혀진 것처럼 보이는 인정기준이 오히려 법조항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상당한 인과관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여전히 경직된 인정태도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예로 김봉환씨 가족이 청구한 유족급여를 “이황화탄소중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며 기각하였는데 이는 김씨의 직업력과 증세,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었던 사실에 근거하여 개인의 사적 행위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는 명백한 직업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업병으로 인

16)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승소하는 비율은 61.5%이다.

정하지 않는 경직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원진레이온 사건 이후에도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는 현실을 드러내는 것이다.

2) 직업병 판정절차 간소화의 실상

직업병 판정기간이 길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것을 막고, 일할 수 없을 정도의 환자가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에 보상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노동부는 증세가 있다는 소견서만 있으면 직업병으로 판정이 나지 않았더라도 요양신청서를 발급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원진레이온측은 직업병 진단을 받기 위해 회사에 정밀검진 신청을 하면 오히려 일을 시키지 않고 일반 병가 휴직으로 처리하여 생계 곤란을 초래해 원진 노동자들이 검진신청조차 기피하였다(자각 증상 호소자 200명 중 검진 신청자는 12명). 회사측은 회사측대로 “환자를 작업시킬 수 없어 병가로 취급한다”고 변명하면서 노동부가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휴업급여는 직업병 확정 판정시에만 지급될 수 있다”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 지급을 회피하였다. 회사와 노동부가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가운데 병을 앓고 있는 노동자는 여전히 불이익 속에 놓이게 되었고, 직업병의 조기검진과 치료는 허울에 불과한 것임이 드러났다.

3) 작업환경 측정 결과의 왜곡 발표

1991년 5월 직업병 인정 투쟁에서 합의된 내용에 의거, 원진레이온의 작업환경이 측정되었고 노동부는 이에 대한 결과를 1991년 10월 1일 발표하였다. 이 발표내용은 “개인 측정결과 중 일부는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작업부서별 평균농도는 기준 이하로 나타나 이 회사의 작업환경은 이상 없다”라는 것이었다. 이 발표내용에 작업환경이 이상이 없다는 것처럼 발표된 것으로 사실상은 시료 중 10%에 해당하는 27개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다는 점, 작업장의 모든 시료를 평균한 농도가 기준치 이하라는 사실이 노동자 개인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 10ppm이라고 하는 허용기준치도 타국의 허용농도에 비하면(미국 1ppm, 소련 3ppm) 여전히 높은 수치로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은 노동부의 의도적인 왜곡 발표로 해석할 수 있고, 노동부가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정책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실감케 한다.

원진레이온의 직업병 투쟁 이후 화려한 모든 정책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황화탄소중독에 대한 직업병 판정을 사측, 노측 대표 4인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4인 판정위원회를 무시하고 사측의 2인에게만 의뢰하여 판정을 내리는 등 오히려 후퇴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노동부의 직업병 예방대책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직업병 검사 - 4인 판정위에서 직업병 인정 → 노동부에서 인정
원진레이온 투쟁 이후
직업병 검사 - 사측 의사인 2인이 직업병 인정 → 노동부에서 인정

4) 산업보건종합센터 법인 설립 신청 반려 과정

노동부는 유해환경 관리를 내실화하고 작업환경 측정기관을 확대하고 직업병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직업병예방연구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 차원의 직업병연구소 등을 지원하겠다는 정책과는 전혀 달리 민간인들이 주도하여 설립하려고 한 산업보건종합센터(직업병연구소, 노동자병원, 산업보건교육센터의 3가지 기능을 갖춘) 설립이 노동부의 법인 신청 반려로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다. 노동부는 1991년 2월에는 “소관 부처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반려하였고 이후에는 “재정적 기초가 부족하다”고 반려하였다.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사의 취임권을 노동부장관에게 달라. ○○○이사는 빼라”는 등 노동자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

문적이고 중립적인 센터 설립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지나친 간섭을 하였다. 이는 이 사회의 기업인, 정치가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책임이기도 한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려 한 센터 설립마저도 불허하려는 노동부의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서 직업병 예방대책이 말뿐이었음을 또 한번 드러낸 사건이었다.

5) 기타

이외에도 근로자 건강 사전신고제 실시와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소매업,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환영할 만한 정책들도 발표되었다.

5. 산업재활구조의 문제점

산업재활이란 여러 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근로자의 요양에서부터 직업 적응훈련을 거쳐 사회에 새롭게 적응하는 과정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14만 명 정도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하고 있다. 1980년 이후 1990년까지 10년 동안만 계산해 본다면 하더라도 140만 명, 6·25 당시의 사상자수가 97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7년마다 총만 들지 않은 소리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하루 평균하여 볼 때도 (연 300일을 기준으로) 443명의 재해자가 생기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만도 7.5명이나 된다.

그러나 이들이 재해를 당하고 나서도 산업재해 인정기준의 까다로움 등으로 인해 아니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등의 이유로 산업재해인정을 받기도 힘들지만 인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들의 미래는 막막하다. 재활의 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손가락 한두 개만 잘려도 기업주가 고용을 기피하고 장애자고용법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노동자로 건강하

게 살아나갈 길은 요원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단순히 산업재해에 대한 물리적 치료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다시 서는 재활은 곧 치료 이상으로 국가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재활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운용실태를 살펴보자.

현재 공식적인 산업재활 시스템은 근로복지공사 산하에 만들어져 있는 인천 중앙병원과 함께 있는 산업재활원과 반월 재활작업소, 1991년 7월 23일 문을 연 대전재활병원이 전부이고,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업재해로 장애자가 된 노동자의 고용대책에 관한 계획보고서」에 의하면 1992년에 광주재활작업소가 건립될 예정이라고 한다.

1) 각 시설의 규모와 운영방식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복지공사에서 운영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치료와 재활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진료 중앙병원(병상수 400), 동해병원(병상수 270), 장성병원(병상수 230), 창원병원(병상수 200), 순천병원(병상수 200), 정선병원(병상수 150), 반월병원(병상수 100), 규폐센터(병상수 150), 대전재활병원(병상수 300)
 의료재활(물리치료) 산업재활원(병상수 300)
 요·휴양 화성요양원(병상수 150)
 직업재활훈련 인천 소재 재활훈련센터, 대전 소재 재활훈련 센터
 보호고용사업 반월재활작업소

이 중에서 의료재활과 사회적 재활의 영역에 직접 포함되는 산업재활원과 재활훈련센터, 재활작업소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살펴보자.

(1) 인천 산업재활원

인천 북구 구산동 산 73번지에서 근로복지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중앙병원과 함께 있는 산업재활원은 산업재해 근로자의 재활, 사회복지 촉

진, 작업 적응훈련을 목표로 입원환자 300명, 통원치료를 받는 환자 350명 정도 수준의 병원이다. 산업재활원 부속으로는 직업훈련센터라고 하여 원예, 표구, 도장, 시계, 목공예 등의 5개 공과가 운영되고 있다. 이 공과 가운데 인원이 많은 과에는 2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적은 과는 3~4명 정도이다.

이곳은 직업훈련센터 등을 통하여 직업재활을 꾀하고 산업재활원의 물리치료공간 등을 통하여 의료재활을 꾀하는 곳이다.

(2) 반월 재활작업소

반월병원과 함께 있는 재활작업소는 인천 직업훈련센터가 취미생활 수준으로 한정되어 있다면 보다 본격적인 직업재활 훈련을 하는 곳으로 인쇄반과 봉제반으로 나뉘어 있다. 1985년 4월 25일 설립된 이 작업소는 수용인원이 처음에는 100명이었으나 현재는 예산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80명 수준이다. 실습생 수용기간은 2년이고 작업소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3급 이상자이거나 그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자와 장애등급 4~10급자 중 미달정원 범위 내에서 입소시킬 수 있다(재활작업소 운영규정). 그러나 실제로는 3급 이상 지망생들이 많지 않아 1급에서 8급까지 받고 있다. 현재는 8급 아래인 수용자도 4명 정도 있다. 이들은 생활관에서 공동생활하는데 현재는 남자만 받고 있다.

(3) 대전재활병원

1991년 7월 23일 대전시 대덕구 범동 285-3번지에 문을 연 대전재활병원은 젊고 유능한 전문의료진으로 구성되어, 근로자에 대한 질병예방에서부터 치료, 재활, 직업적응 훈련을 통한 사회복지에 이르기까지 전인적 총체적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내세우며 개원하였다. 또 근로자의 요양에서부터 직업적응 훈련까지 단일기관에서 총체적 전인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이 지역 근로자들에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대전재활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훈련 및 의지센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재활훈련

설치공과: 전자, 귀금속공예, 전산, 인장, 봉제, 목공예, 인쇄(7개 공과)

운영체제: 훈련수요 및 사업여건에 따라 단계별 확대운영

1단계 - 전자, 귀금속공예(1991년 5월 10일)

2단계 - 전산(1991년 하반기중 설치)

3단계 - 인장, 봉제, 목공예, 인쇄(1992년 이후 설치 검토)

1991년 7월 1일부터 훈련개시

2)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재활시스템을 살펴보면 외형상 물리치료, 직업훈련 등의 과정이 단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산업재활원에서 의료재활을 피하고 또 의료재활과 함께 재활훈련센터의 다양한 훈련을 통해 새로운 직업 적응능력을 습득하도록 하여 사회 복귀를 도모한다는 것이 순서적으로도 그럴듯하게 맞다.

그러나 실제 실태적으로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산재 환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는 또다른 기준 즉 수량적으로나 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1991년 상반기만 기준해서 보더라도 사고성 재해자수는 6만 2,324명이고 그 중에서 사망자수 1,045명을 빼면 6만 1,000명 수준으로 매년 엄청난 수의 산재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이들 환자의 일차 진료 외에 재활과 관련된 시설규모를 보면 산업재활원의 300개 병상과 대전재활병원의 300개 병상이 그 전부이다. 그 중에서도 대전재활병원은 300개 병상 중 일반 주민을 위한 과도 여러 개 있으므로 이것은 온전하게 의료재활을 위하여 산업재해환자들에게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또 직업재활훈련의 경우도 보면 공식적으로는 인천 소재 재활훈련센터

의 경우 연 420명을 수용하기로 했다고는 하나 현재는 100여 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 과정들이 실제 산업재해 환자들의 의료적 직업적 재활에 보탬이 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규모면에서 너무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혜택을 받는 재해 노동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의료적 재활에서 산업재활원은 물리치료실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보다 큰 문제는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등 신체의 여러 기능을 상실한 환자들이 물리치료를 통해서 조금 더 활동능력을 찾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이들이 불구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보통 가족의 책임자로서 앞으로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절박한 위치라는 것 등이 주는 정신적인 고통을 얼마나 건강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하는 정신적 재활을 위한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정신적 재활을 위해서는 그들 개인이 스스로 현실을 이겨내고 새롭게 적응할 수 있는 정신적 치료와 사회가 이들 환자를 얼마나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하는 양 측면이 다 중요하다.

그러나 후자의 문제를 논외로 한다고 하고 전자만을 살펴보면 산업재활원의 경우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기에 전문의가 산업재해 환자들의 정신적 재활을 돕는 프로그램은 전무하다.

이들의 육체적 치료만을 담당할 뿐 정신적 손실은 철저히 개인에게 맡겨지는 구조인 것이다. 또 이들을 위한 오락시설이나 체육 시설 등도 없고 다만 중앙병원과 산업재활원 합쳐서 사회사업과에서 운영하는 카운셀러가 한 명 있을 뿐이다.

특히 마비환자들의 경우 성기능이 없어져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현실을 비판하여 자살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이런 특수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그들이 겪어야 하는 정신적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치료는 당연히 육체적 정신적 부분을 같이 치료해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나 현재 산업재활원은 한 부분의 치료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직업재활훈련 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훈련과정이 사회 속에서 재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함으로 해서 환자들의 호응도 받지 못하고 실효성도 떨어

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산업재활원과 함께 있는 직업훈련센터의 훈련과정을 보면 이것이 직업재활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으로서 의미를 갖기보다는 단순한 취미생활 정도로 이용되고 있다. 그것은 이곳에서 배운 기술을 토대로 취직 알선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보통 3개월 정도 훈련 등으로 끝나 충분한 훈련도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본격적인 훈련과정인 반월재활작업소도 마찬가지인데 이곳의 인원이 100여 명밖에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곳은 교육기관과 생산활동 양 측면을 다 띠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이 작업소의 성격을 애매하게 만들기도 한다. 교육기관이라고 하기에는 정상적으로 1일 7시간씩 일을 하기 때문에 공장과도 같고 생산활동을 주 측면으로 보면 2년 이상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실제로 2년 전 실습생들이 앞으로의 직장보장을 집단적으로 요구한 일도 있었다.

시설이나 제도가 오히려 줄어들고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나 사용자들이 산업재해 환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사회복지적으로 재활을 위한 제반 과정을 현실성있게 마련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이것이 영리적 성격을 다분히 띠는 근로복지공사에서 운영된다는 데도 원인이 있다.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영리와는 상관없이 운영되어야 할 재활원이나 직업재활훈련 과정 등이 수익이 모든 사업의 전제조건이 되는 공사 차원에서 운영될 경우 시설 확충이나 제반의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제3부 보론

노동부·노동위원회에 대한 노동자의식 조사

제4부 부록

1. 20세기의 노예 - 선원노동자
2. 전근대적 노동조합 탄압의 전형 - 목산호텔
3. 각종 성명서와 참고자료
4. 『노동인권소식』중 노동자 인권